

CONTENTS

권두칼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어디서 기를 것인가? · 최선집 02

현안분석

정부재정통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우발부채산정에 관한 논의

· 정성호 06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 안종석 28

정책연구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 박명호 · 전병목 48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 김학수 52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 박명호 · 정재호 56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 홍성훈 · 강성훈 · 허경선 5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 홍성훈 · 안종석 62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재호 · 강성훈 6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영국, 2015 예산안 발표 외 70

정책흐름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여 투명성 강화 100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102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106

이슈&포커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허브 되려면 큰 폭의 규제완화 필요” 외 113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어디서 기를 것인가?



최선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변호사

지난 4월 1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 수상과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가 독일의 자동차, 제약, 정보통신 분야의 회사를 인도가 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무역박람회인 '하노버 메세'에 독일 투자가들의 인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참석한 모디 수상이 메르켈 총리를 만나면서, 오히려 인도가 독일의 기업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인도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사들인 독일 기업 128개 중 35%를 매입했다. 이는 러시아보다는 적은 수이지만 중국보다는 많은 것으로, 그 금액을 따져 보더라도 2013년에만 6,100만유로에 이른다.

월스트리트는 인도 회사가 인수합병(M&A)한 회사는 모두 독일의 중소기업인 미텔슈탄트¹⁾이며, 가족회사(family-owned company)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도의 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

이상의 기사에서 우리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가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인도는 독일의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국 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 택하고 있던 해외에서의 기업 매수에 가하던 규제를 해제하기도 했다. 물론 국내에서의 M&A로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처방만으로는 기술력 향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 기업은 2009년도 대독일 투자규모의 7배나 달하는

1) Mittelstand, 종업원 500명 이하, 연 매출액 5천만유로 이하의 기업으로 독일 전체 고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생산량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6,100만유로를 4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에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인도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이 높고, 소위 ‘먹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irm)들과는 달리 장기비전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 때문에, 해외로 넘어가게 될 처지에 있는 독일 기업은 인도 기업이 매수자가 되길 희망한다. 인도로 넘어간 독일 기업이 대부분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들이 그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 만든 회사가 비록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여, 혹은 다른 연유로 매각된 경우에도 자신들의 분신과 같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는 비단 독일 기업인들만의 정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우수한 기술력에 매력을 느낀 많은 해외 기업들이 기업매수 입찰에 참여하였지만, 인도 기업의 이 같은 좋은 이미지가 독일 기업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상세한 정서적인 면까지 국제적 M&A에서는 중요시된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이니 디테일 경영이니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위 인도 관련 기사는 인도의 재벌기업인 PGM Group of Industries 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계약수주 건에서 경쟁자였던 독일의 Rail.One을 사들인 것을 계기로 신문에 실렸다. 인도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아 해외로 진출하는 단계에서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와 육성은 고사하고, 규제까지 받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더 이상의 사업이 불가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은 업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찰참여가 금지된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한 채 어떻게 글로벌 성장(global expansion)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아 자라 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그동안 해오던 사업 자체를 수행하는 게 금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국내에서의 경쟁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로규제 업종은 국제적 경쟁과는 관계 없는 부문만으로 결정하므로 지나친 우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요즘 서비스 산업을 보면 반드시 그렇게 안이하게 볼 수만은 없다. 한 시골의 작은 커피집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와
육성은 고사하고,
규제까지 받고 있다.**
.....

.....
**중견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여야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게 된다.**
.....

한국의 중견기업은 2세 경영자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창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기업의 대부분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족회사이다. 그러나 한국 중견기업의 약 절반 정도는 대기업의 성장에 따라 커온 의존형이고 나머지 반이 거래선이 다변화된 비의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견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여야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만으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와는 별개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정부재정통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우발부채산정에 관한 논의
정성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정부재정통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우발부채산정에 관한 논의

I. 서론 및 문제제기

최근까지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가 사회 전반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러한 연금 개혁 시도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연관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중 하나가 우발부채의 관리이다. 최근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이하 GFS) 체계가 변화(개정)되면서 우발부채의 범주가 구체화되었다.

우발부채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의 산물인데, 현금주의 방식인 GFS 1986에서 복식부기 방식인 GFS 2001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의적으로 정의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GFS 2001에서는 우발계약(우발부채, 우발자산)의 범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손실개념의 우발부채와 수익개념의 우발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GFS 2014로 개정되면서 우발부채 구분에 관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우발부채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공부문부채통계(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이하 PSDS)¹⁾ 지침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적용례를 살펴보면 국가결산보고서상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성급여인 사학·국민연금 총당부채는 그 규모마저 보고되지 않고 있다. GFS 2014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는 기타부채(연금수급권)로, 사학·국민연금 총당부채는 사회보장성급여로 하여 부기항목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우발부채의 개념적 논거마저 명확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상 우발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채무부담 행위와 예산외 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jazzsh@kipf.re.kr)

1) GFS와 PSDS는 IMF에서 발행한 재정통계기준이다.

무부담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예산외 의무부담 행위에 BTO 최소지급보장금(MRG) 등 또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내역의 중복(동어반복)이 있다.

우발부채에 관한 논의는 기업회계에서부터 출발한다. 민간 기업은 우발부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우발부채 규모는 그 규모가 크고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발부채 산정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 후 새로운 분류기준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GFS 2014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를 재분류한다. 왜냐하면 GFS 2014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²⁾ 및 『국가회계편람』 등에서 정의되었던 우발부채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GFS 2014에서는 우발부채를 구체화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우발부채를 재분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우발부채 산정은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라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정부재정통계(GFS)는 국민계정체계(SNA 2008), 공공부문채무통계(PSDS), 수지와 국제투자지침(BPM 6) 등 기타 거시재정 통계자료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나 분석기들이 정부 재정운영과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자료이다. 더욱이 일반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유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GFS 2014에서는
 우발부채를 구체화하여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우발부채를 재분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II. 우발부채의 개념 및 변천과정

1. 우발부채의 개념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2011)』에 의하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편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와 ‘현재 의무이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편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항목으로 기록한다.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편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회계편람』(2014)에 근거하여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주석으로만 인식하는 경우, 또는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

2)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ASB)에서 발행하였고, IPSAS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발행하였다.

“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재정상태표상
 부채로 기록한다.**
 ”

고 있다.

첫째,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우발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재정상태표상 부채로 기록한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의무의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 법적(의제) 의무가 존재하고, 소송이 불리하여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규가 제·개정되어 추후 의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 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경우, 재정상태표 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나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이다. 다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

셋째, 우발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014)」 제59조(우발상황)에 근거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득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우발부채로 규정한다. ‘과거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또는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에서도 총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 <표 1>,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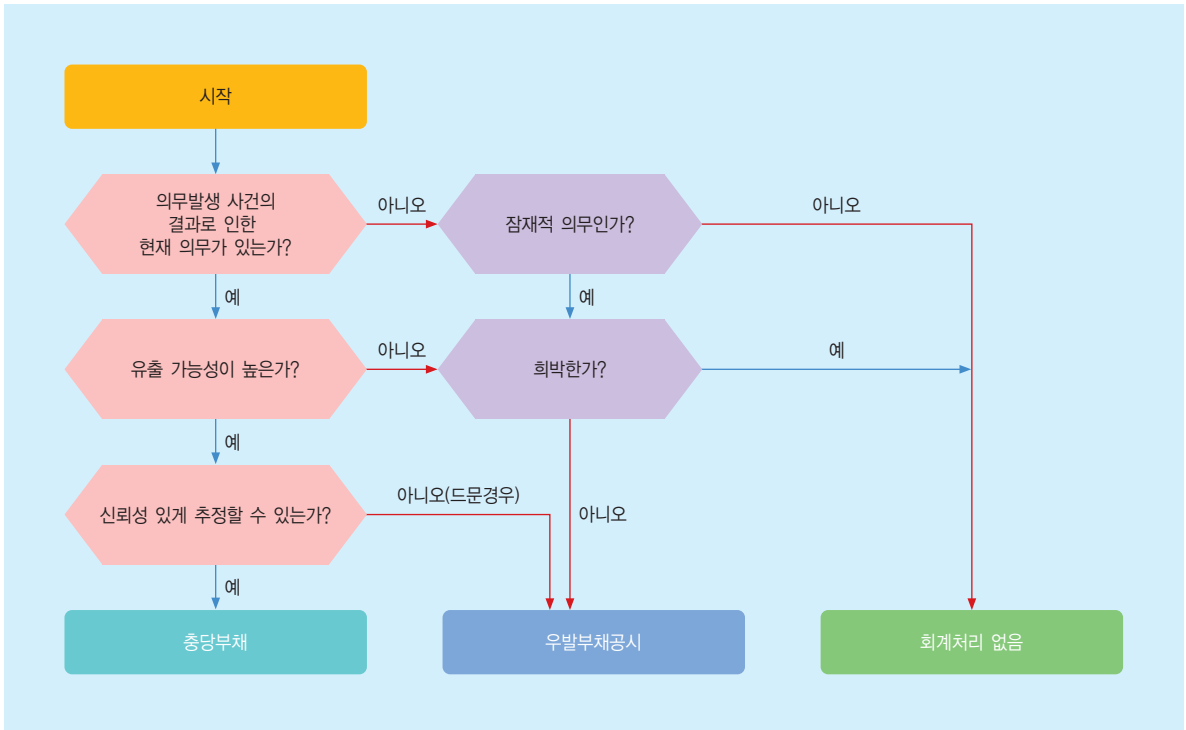
〈표 1〉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편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 (a) 현재의무, (b) 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무 존재	자원유출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 존재	자원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잠재적 의무 또는 현재의무 존재
총당부채 인식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총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총당부채 공시	우발부채 공시	요구되는 공시사항 없음

자료: IPSAS(2013), p.632.

[그림 1] 의사결정 트리(총당부채 vs.우발부채)



자료: IPSAS(2013), p.635.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의 우발부채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여 설명한 Polackova(1999)는 부채를 ‘직접부채’와 ‘우발부채’, ‘명시적 부채’와 ‘암묵적 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부채’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정부가 저야 할 재정부담, ‘우발부채’는 특정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재정부담이다. ‘명시적 부채’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재정부담이고, ‘암묵적 부채’는 법적 관점에서 정부가 반드시 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정치적 압력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부담으로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 2〉 Polackova의 부채 분류

부채	직접부채(Direct)	우발부채(Contingent)
명시적 부채 (Explic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채무(차입금 및 국채) 임금 및 연금의 체납액 예산상의 지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정부지출(공무원 임금 및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 및 공공·민간기관(개발은행 등)의 차입에 대한 정부보증 다양한 형태의 용자에 대한 포괄적 정부보증 (모기지론, 학자금대출, 농업대출, 중소기업대출) 정부발행 거래 및 환율보증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보증 정부보험제도(예금보험, 사적 연금펀드소득, 곡물보험, 홍수보험, 전쟁위험보험)
암묵적 부채 (Implic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의무가 없는 미래 공적 연금급여 법적의무가 없는 사회보장급여 법적의무가 없는 미래 의료지출 미래 공공투자사업의 반복적(다년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보증을 받지 않은 지방정부,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채무불이행 민영화된 공기업의 부채 청산 은행파산(정부보험지원) 정부보증을 받지 않은 연금기금, 고용기금, 또는 사회보장기금 (소액투자자 보호)의 파산 중앙은행의 채무불이행(외환계약, 통화방어, 국제수지안정) 급격한 해외자본이탈에 따른 구제금융 자연환경복구, 재해구호, 국방지출 등

자료: Polackova(1999)

2. 우발부채 개념의 변천

우발부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편람』 등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GFS 2014는 기존법령 및 문헌, 기준에서 정의하던 우발부채의 개념체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보다 더 세분화된 분야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GFS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발부채의 개념은 GFS 2001과 GFS 2014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1) GFS 2001

GFS 2001에 의하면 우발계약(contingent contract)은 기관단위(institution unit)에 조건부 금융청구권을 창출하는 계약으로, 이때 조건부란 적시된 조건이 발생할 때에만 청구권이 성립한다. 우발계약은 당사자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발부채가 금융정책 및 분석 목적의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부기항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GFSM, 2001, 문단 7.146).

우발계약은 우발자산과 우발부채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단위의 우발채무는 정부가 제 3자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차입자의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발부채의 예는 신용장, 융자한도(line of credit), 정부계약의 상대방인 다른 단위에 제공된 조세채무 면책특권 가운데 예상치 못한 조세채무에 대한 면책특권, 다른 단위가 정부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 등이다. 우발자산은 정부가 다른 단위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금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GFSM, 2001, 문단 7.147).

우발자산 또는 우발채무는 수취 또는 지불되어야 할 경제적 편익을 순가치로 쉽게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한 차입금의 명목가치가 모두 파악될 수 있겠지만, 보증인으로서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

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는 각 용자금액의 채무불이행 확률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우발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우발계약의 성격과 이들의 가치 추정치를 제공한다(GFSM, 2001, 문단 7.148).

이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상당수의 금융계약에서 계약은 일방 또는 쌍방에게 조건부 성격을 띠지만 이러한 계약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일체는 금융자산 및 부채로 인식된다(GFSM, 2001, 문단 7.149).

2) GFS 2014

최근 개정된 GFS 2014는 우발부채의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고, PSDS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GFS와 PSDS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발부채’는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하고 있다.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부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상환의무 및 그 규모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PSDS, 문단 4.5; PSDS, 문단 4.7).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 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거한 금융

“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 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거한 금융협약인 반면,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거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되어야만 부채로 인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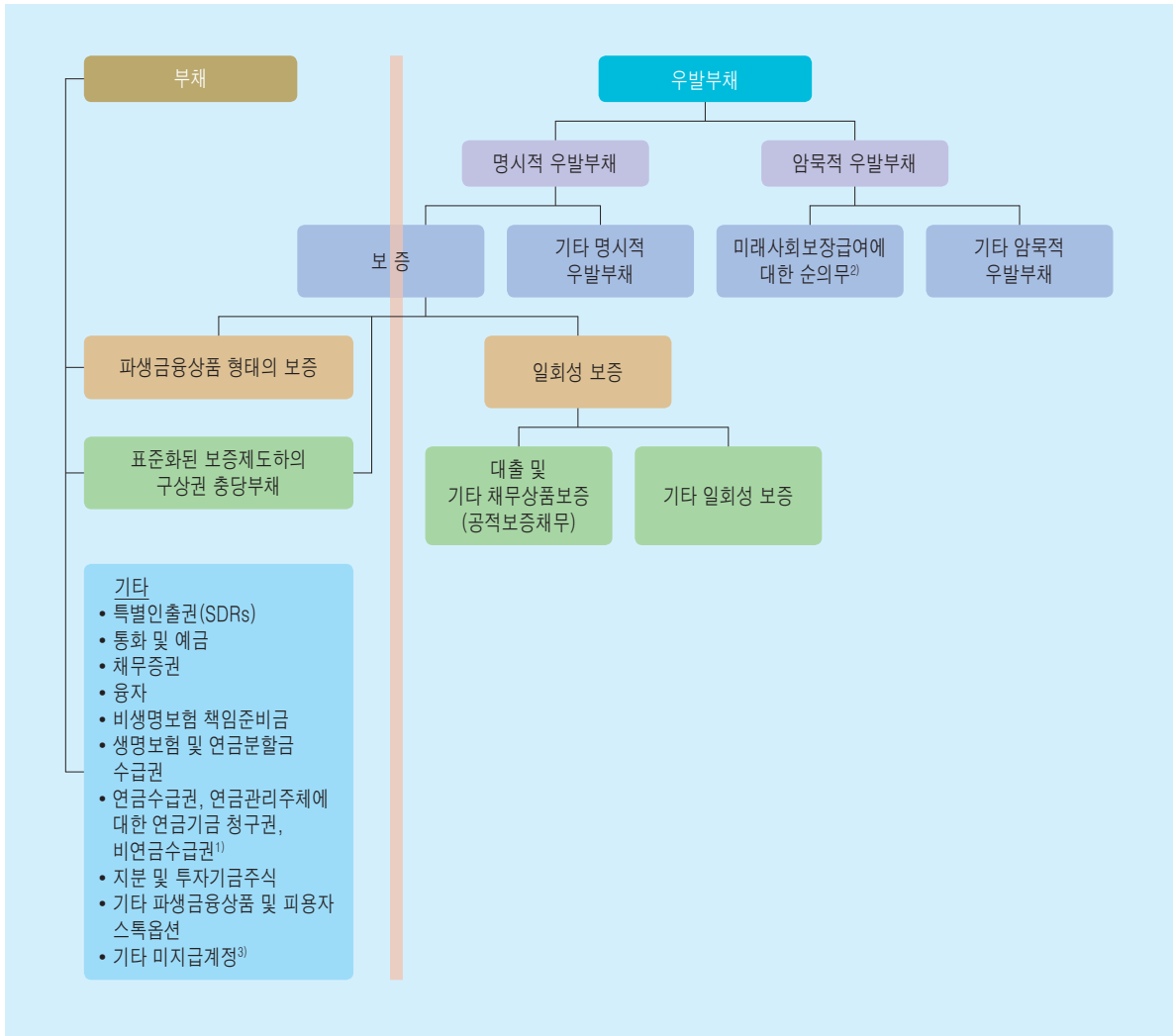
협약인 반면,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거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되어야만 부채로 인식한다.

명시적 우발부채는 ‘보증’과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되고, 암묵적 우발부채는 ‘미래의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및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된다.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증은 ‘금융상품 형태의 보증’, ‘표준화 보증’,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되고, 그중에서 일회성 보증은 ‘대출 및 기타채무상품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된다(GFSM, 2014).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그림 2]와 같다.

<표 3> 우발부채의 구분/종류

우발부채	구분	종류
명시적 (explicit)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생금융상품형태의 보증: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자산 및 부채에 포함하지만 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기말 포지션으로 추정) 표준화 보증: 유사한 성격의 소액을 대량으로 발행하는 보증으로 부채에 포함(예: 학자금용자, 주택담보용자 등) (비율로 추정) 일회성 보증: 개별적으로 집행되어 위험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보증으로 용자(채무상품)에 대한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신용한도, 약정 등)으로 구분
	기타	잠재적 법정청구권(계류 중인 소송사건), 손실부담약정, 미납자본금 등
암묵적 (implicit)	사회보장	미래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기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공공부문의 무보증 채무, 기타 공공부문 보증실패에 대한 보증, 환경부채, 자연재해 등 구호비용

[그림 2] 거시경제통계상 부채 구분



주: 1) 비자율적 부과식 고용자 연금제도에 대한 부채는 포함

2) 비자율적 부과식 고용자 연금제도에 대한 부채는 제외

3) PSDS(2011) figure 4.1 기타란에는 기타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GFSM(2014), p.220.

[그림 2]는 거시경제통계에서 부채와 우발부채를 개괄적으로 구분한 도해이다. 명시적 우발부채는 보증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러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는 아니다. 예를 들어 파생금융상품과 표준화된 보증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balance sheet)에 부채로 기록된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이나 표준화 보증 이외의 어떤 보증도 금융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GFS 2014, 문단 3.49).

일회성 보증은 채무상품이 매우 특수하여 그 채무와 관련된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즉 표준화된 보증과는 대조적으로 일회성 보증은 개별적이며, 보증인은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없다(GFSM 2014, 문단 7.257). 따라서 대부분의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된다.

대출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은 일회성 보증의 다른 유형과는 다른데, 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지불은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상으로 보증한 것이다.

기타 일회성 보증의 경우, 자금이 실제 제공되거나 선급될 때까지 금융부채·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GFSM 2014, 문단 7.258~260). '대출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 또는 '일회성 보증'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확약으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요구된다.

한편 '미래 사회보장급여 암묵적 순의무'인 퇴직급여(고용관련 연금³⁾이 아닌)와 의료보장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는 거시경제 통계시스템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미래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암묵적 순

“
일회성 보증은 채무상품이 매우 특수하여 그 채무와 관련된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즉 표준화된 보증과는 대조적으로 일회성 보증은 개별적이며, 보증인은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없다.
 ”

의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정상태표에 기록되지 않는다(GFSM 2014, 문단 7.252). 또한 현행 법과 규정에 의해 이미 획득하였으나 미래에 지급되어야 할 사회급여의 현재가치는 피용자 고용관련 연금 부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 금액에서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은 정부단위가 미래에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암묵적 순의무에 대한 표시이다(GFSM 2014, 문단 7.261).

III. 중앙정부의 우발부채 적용

1. 우발부채 구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국가의 보증, 보험, 연금충당부채, 소송사건, 담보제공자산, 보증채무 등이고,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렇듯 장기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장기충당부채로 인식하기도 하고, 보충적으로 우발부채로 인식하여 주석으로도 공시한다.

3) 고용관련 연금급여란 공무원·군인연금 등 법적 계약형태를 의미한다.

〈표 4〉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No	국가결산보고서 내역	GFS 2014 기준		코드 ¹⁾
		내용	분류결과	
1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²⁾	법률에 의한 의무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5
2	담보제공자산(채권최고액)	금융계약	일회성 보증	5
3	파생금융상품(부채) ³⁾	파생상품 계약	파생금융상품형태의 보증	3, 5
4	퇴직급여총당부채	고용계약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3
5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고용계약	기타 부채(연금수급권)	3 ¹⁾
6	군인연금 총당부채	고용계약	기타 부채(연금수급권)	3 ¹⁾
7	보험총당부채	보험계약	표준화 보증 또는 일회성 보증	3
8	보증총당부채	보증계약	표준화 보증 또는 일회성 보증	3
9	퇴직수당 총당부채	고용계약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3
10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	명시적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3
11	기타부채(사회보험사업)	사회보장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8
12	보증채무 ⁴⁾	보증계약	일회성 보증	5
13	지급보증(원화)	보증계약	일회성 보증	5
14	지급보증(외화)	보증계약	일회성 보증	5
15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5
16	공공손실부담	법률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5
17	공공금융비용 지원	약정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5

주: 1) 코드는 국가결산보고서상 Ⅲ. 재무제표의 주석번호를 의미. 3번 코드는 장기총당부채, 5번 코드는 우발부채, 8번 코드는 기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표 No.5~6은 총당부채로 분류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2) 중앙정부의 경우 소송사건(원고)도 제시하고 있음, 반면 지자체는 피고만 제시하고 있음

3) 파생금융상품은 국가재무제표에 장기총당부채로 계상하고, 우발부채로 인식하여 주석으로도 보충설명하고 있음(중복)

4) 보증채무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를 의미함

〈표 5〉 국가결산보고서상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항목별 인식방법과 보증잔액

(단위: 백만원)

No	구분	인식 방법	보증 잔액		
			2013년	2012년	2011년
1	계류 중인 소송사건(피고)	주식 공시	9,658,200	9,224,017	5,939,563
2	담보제공자산(채권최고액)	주식 공시	28,337	28,858	28,709
3	파생금융상품(부채)	부채로 인식	1,313,913	1,362,301	1,587,013
4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로 인식	406,574	359,454	343,350
5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¹⁾	부채로 인식	484,389,233	351,428,278	276,963,804
6	군인연금 총당부채 ²⁾	부채로 인식	111,866,156	85,478,163	52,241,558
7	보험충당부채	부채로 인식	681,768	635,376	569,778
8	보증충당부채(표준화 보증)	부채로 인식	3,166,617	2,687,359	2,389,758
9	퇴직수당 총당부채	부채로 인식	31,456,793	30,501,184	28,796,853
10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	부채로 인식	1,871,729	1,048,024	642,142
11	기타부채(사회보험사업)	부채로 인식	12,388,847	11,811,521	11,452,143
12	보증채무	주식 공시	32,978,475	32,783,555	35,057,687
13	지급보증(원화)	주식 공시	3,670,407	3,596,424	12,199,541
14	지급보증(외화)	주식 공시	394,000 (394백만달러)	394,000 (394백만달러)	
15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시 비용, 주식 공시	670,360	594,477	435,117
16	공공손실부담	지급 시 비용, 주식 공시	343,500	30,400	282,494
17	공공금융비용 지원	지급 시 비용, 주식 공시	325,826	363,921	265,660
전체단순합산(공무원·군인연금 포함)			695,610,735	532,600,912	429,195,170
공무원·군인연금 총당부채 제외			99,355,346	95,694,471	99,989,808

주: 1) 공무원 총당부채 산정방식은 2011년 'ABO', 2012년 'ABO' 2013년 'PBO'방식으로 변경되어 금액 변동

2) 군인연금 총당부채의 산정방식은 2011년 'VBO', 2012년 'ABO' 2013년 'PBO'방식으로 변경되어 금액 변동

1. VBO(확정급여채무):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을 완전히 확보한 수급권자에 지출되고 있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재직자의 경우 일시퇴직급여를 현재보수 기준으로 계산
2. ABO(누적급여채무):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의 완전한 확보와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예상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를 현재보수 기준으로 계산
3. PBO(예측급여채무):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예상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를 계상하되, 예상 퇴직시 보수기준으로 계산(승진 등 급여상승분 감안)

〈표 5〉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항목별 인식방법과 보증잔액을 설명하고 있다.⁴⁾ 첫째,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주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편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즉 2심에서 패소)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로 공시

하고 있다. 둘째, 담보제공자산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용, 채권최고액, 담보권자, 차입금액을 주식으로 공시한다. 셋째, 파생금융상품(내역)은 파생상품의 내용 및 기말포지션에 대한 자산, 부채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더불어 주식으로도 공시하고 있다.

4) 이하 설명 내용은 FY 2013 국가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
**보증충당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한다.**
 ”

넷째,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추정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다섯째 및 여섯째, 공무원 및 군인연금충당부채는 연금수급자의 경우 장래 연금 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며, 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은 할인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보험수리적 추정에 기반한다. 일곱째, 보험충당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보험사업(예: 무역보험, 농어업재해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 충당부채이다.

여덟째, 보증충당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하여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한다. 보증충당부채는 표준화 보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일회성 보증이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일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표준화 보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다소 제한적이다. 아홉째, 퇴직수당충당부채는 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미래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수당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열번째,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는 경제적 편익

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소송사건(2심 패소 확정 시) 등을 부채로 인식한다. 열한 번째, 기타부채(사회보험사업)는 국가회계실체가 사회보험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준비금)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한다. 열두 번째, 보증채무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서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보증의 피보증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열세 번째 및 열네 번째, 지급보증은 원화와 외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이외의 지급보증 내역으로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그 예로는 기획재정부(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외 33개 업체, 포천미래(주) 외 45개 업체, 삼부토건(주) 외 3개 업체)와 통일부(한국산업단지공단 외 98개 업체)의 지급보증액(원화)과 금융위원회(캠코글로벌 1호-33호 선박투자회사)의 기호구조조정 관련 394백만달러가 있다. 열다섯 번째, BTO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 협약 서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0건 사업)에 관한 비용이며,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지급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은 주식으로 공시한다. 열여섯 번째, 공공손실부담은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공서비스(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부담금 지급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은 주식으로 공시한

다. 열일급 번째, 금융비용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지하철공사로 구분하여 설명이 가능한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한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지하철 가설동 시 발생한 건설비용의 10%에 대한 이자지원 약정과 관련된다. 각종 합의에 따라 공기업, 지자체에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비용 지급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종합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및 국가회계편람에서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할 때 '자원의 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GFS 2014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부 '충당부채(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는 '우발부채'로 분류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기타부채(연금수급권)'로 분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GFS 2014 및 PSDS에 근거하여 우발부채를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의 우발사항⁵⁾ 적용(GFS, PSDS 등)

GFS, PSDS의 우발부채 기준에 따라 국가회계실체의 우발사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GFS 2014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기타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충당부채 중 일부는 기타부채로 분류되어야 하고, 일부는 우발부채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은 법적 고용계약에 의해 필히 지급되어야 할 직접부채이기 때문에 기타부채(확정부채)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부채규모는 엄청나게 증가

“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GFS 2014 및 PSDS에
근거하여 우발부채를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공공부문 부채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PSDS는 기타 부채로 분류).

다만, 사학·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되지도 않고 그 규모를 추계하여 보고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국가의 보전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데,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GFS 2014 기준에 근거하여 부기항목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의제의무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재정보전이 되는 만큼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다.

3. 우발부채의 측정(Contingent Liabilities Measure)

〈표 4〉는 GFS 2014에 근거하여 우발부채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우발부채를 산정해 보면 〈표 6〉과 같다. 일회성 보증 등 명시적 우발부채는 40조 9,190억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는 44조 7,329억원, 암묵적 우발부채는 12조 3,888억원에 달한다.

5)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우발사항'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우발상황'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추후 '우발부채'라는 용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표 6〉 명시적 우발부채-보증 잔액(일회성 보증 등)

(단위: 백만원)

No	구 분	인식 방법	보증 잔액		
			2013년	2012년	2011년
2	담보제공자산(채권최고액)	주석 공시	28,337	28,858	28,709
7	보험총당부채	부채로 인식	681,768	635,376	569,778
8	보증총당부채(표준화보증)	부채로 인식	3,166,617	2,687,359	2,389,758
12	보증채무	주석 공시	32,978,475	32,783,555	35,057,687
13	지급보증(원화)	주석 공시	3,670,407	3,596,424	12,199,541
14	지급보증(외화)	주석 공시	394,000 (394백만달러)	394,000 (394백만달러)	
	단순합산		40,919,604	40,125,572	50,245,473

〈표 7〉 명시적 우발부채-기타 명시적 보증잔액

(단위: 백만원)

No	구 분	인식 방법	보증 잔액		
			2013년	2012년	2011년
1	계류 중인 소송사건(피고)	주석 공시	9,658,200	9,224,017	5,939,563
4	퇴직급여 총당부채	부채로 인식	406,574	359,454	343,350
9	퇴직수당 총당부채	부채로 인식	31,456,793	30,501,184	28,796,853
10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	부채로 인식	1,871,729	1,048,024	642,142
15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시 비용, 주석공시	670,360	594,477	435,117
16	공공손실부담	지급 시 비용, 주석공시	343,500	304,000	282,494
17	공공금융비용 지원	지급 시 비용, 주석공시	325,826	363,921	265,660
	단순합산		44,732,982	42,395,077	36,705,179

〈표 8〉 암묵적 우발부채-사회보장 보증잔액

(단위: 백만원)

No	구 분	인식 방법	보증 잔액		
			2013년	2012년	2011년
11	기타부채(사회보험사업)	부채로 인식	12,388,847	11,811,521	11,452,143
-	국민연금 총당부채	×	-	-	-
-	사학연금 총당부채	×	-	-	-
	단순합산		12,388,847	11,811,521	11,452,143

〈표 8〉은 암묵적 우발부채내역에 관한 내용인데, 기존에 우발부채로 계상하던 공무원·군인연금 총당 부채를 제외하고 사학·국민연금만을 추계하였다. 사학·국민연금부채는 국가회계실체와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또는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는 없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합리적 추정과정을 거친 후 부기항목에 기록하고 미래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요약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대안 차원에서 암묵적 우발부채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적용

1. 우발부채 구분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서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BTO 계약내역 등에 관해 주석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2014)」에서는 소송사건과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및 BTO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추가지급금을 우발부채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판결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으로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상 확정부채인 ‘기타 비유동부채’로 처리한다.

둘째, 지급보증의 회계처리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부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아니지만 이들 산하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2014)」에서는
 소송사건과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및 BTO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추가지급금을 우발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

기관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 이들 공사와 공단에 대해 행한 보증행위(예: 태백시의 오투리조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경우 보증받은 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받은 자의 채무를 상환하여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상 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셋째, BTO 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지급금은 우발상황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도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이미 정의한 바와 동일하다.

둘째,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대차의 보증을 포함하여 SOC 건설(예: 대전 천변고속화도로)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전제로 하는 채무로 교환거래의 대가로서 교환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계리하지 않는다. 다만 회계적 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단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삭제하고,
 세부내역은 기타약정행위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토지리턴제와 부지매입확약은
 전면 금지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넷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토지리턴제,⁶⁾ 부지매입확약,⁷⁾ 기타 유형(이자비용지원 등),⁸⁾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금이 포함되는데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는 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금이 포함되므로 동어반복적이다. 또한 재무보고서 우발부채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 관해 정확하게 기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이는 고의로 누락하였을 개연성도 있고, 인지하지 못해 누락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2012년도 토지리턴방식의 약정이 있었음에도 재무보고서 우발부채란에 기록하지 않고 선수금 항목에 기록하고 있다. 한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지급보증도 아니고, 판매보증도 아니다. 따라서 ‘기타 약정행위’라 명명하고 세부내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는 삭제하고, 세부내역(토지리턴제, 부지매입확약)은 기타약정행위로 재분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토지리턴제와 부지매입확약은 전면 금지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BTO 계약내역(BTO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금)은 BTO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전금 명목을 계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우발부채 적용 요약

No	내역	지자체 재무회계운영규정(*14)	지자체 재무보고서	비고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	✓	
2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	✓	
3	채무부담행위		√(삭제)	우발부채 타당성 낮음
4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삭제)	- 토지리턴제와 부지매입확약은 ‘기타약정행위’로 재분류 - 기타유형(이자비용)은 공공금융비용 등으로 재분류
5	BTO 최소수입보장지급금	✓	✓	4번과 동어반복(tautology)

6)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 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이다.
 7)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형태이다.
 8)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이외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이다.

〈표 10〉 특·광역시 우발부채 현황(FY 2008~ FY 2013)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지역이름	소송가액(부채계상액)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지급액
2008	서울특별시	302,185 (4,350)	2,729	0	n/a
2009	서울특별시	293,876 (39,328)	0	0	n/a
2010	서울특별시	78,505 (15,884)	0	0	n/a
2011	서울특별시	3,885 (3,885)	0	0	n/a
2012	서울특별시	145,523 (28,832)	16,701	0	3,400
2013	서울특별시	202,529 (2,055)	50,000	0	87,400
2008	부산광역시	17,745 (2,457)	69,432	0	n/a
2009	부산광역시	58,763 (7,924)	108,305	0	n/a
2010	부산광역시	2,524 (569)	128,553	0	n/a
2011	부산광역시	1,261 (1,047)	155,076	0	n/a
2012	부산광역시	23,723 (1,121)	172,217	0	4,644,700
2013	부산광역시	24,874 (3,911)	119,569	0	1,458,900
2008	대구광역시	4,866	12,000	n/a	0
2009	대구광역시	24,532	7,236	n/a	0
2010	대구광역시	27,882	3,556	n/a	0
2011	대구광역시	43,547	n/a	0	0
2012	대구광역시	7,891	15,000	n/a	10,800
2013	대구광역시	82,979	n/a	n/a	208,909
2008	인천광역시	29,160 (594)	n/a	n/a	0
2009	인천광역시	31,466 (20)	n/a	n/a	0
2010	인천광역시	28,806 (14)	n/a	n/a	0
2011	인천광역시	48,732 (235)	n/a	n/a	0
2012	인천광역시	58,218 (1,413)	n/a	n/a	0
2013	인천광역시	97,697 (12,630)	n/a	n/a	0
2008	광주광역시	1,996 (0)	0	0	0
2009	광주광역시	7,738 (0)	0	0	0
2010	광주광역시	9,804	0	0	0
2011	광주광역시	6,247 (534)	0	0	0
2012	광주광역시	20,402 (814)	32,800	0	0
2013	광주광역시	25,997 (1,547)	0	0	0
2008	대전광역시	1,996	26,600	n/a	0
2009	대전광역시	4,410	0	162,980	n/a
2010	대전광역시	4,266 (136)	0	181,035	0
2011	대전광역시	2,510 (40)	0	189,541	0
2012	대전광역시	30,761 (854)	0	168,039	0
2013	대전광역시	20,108 (615)	n/a	134,062	620,500
2008	울산광역시	19,412 (0)	n/a	n/a	0
2009	울산광역시	17,870 (0)	n/a	n/a	0
2010	울산광역시	48,663 (841)	n/a	n/a	0
2011	울산광역시	2,237 (400)	n/a	n/a	0
2012	울산광역시	330 (89)	n/a	n/a	0
2013	울산광역시	535 (476)	n/a	n/a	0

주: 1. 일부 지자체만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를 재무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음(경남, 경북, 전북, 인천 등)

2. 인천행정부는 FY2012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BTO 지급액란에 '향후 부담추정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서울, 대구,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FY 2008~FY 2013

V. GFS 2014에 근거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분류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표 1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분류 검토

No	내역	중앙정부(GFS 분류기준)	지방자치단체	비고
1	계류 중인 소송사건(피고)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2심 패소 시)	○	2심 패소 시로 변경
2	담보제공자산(채권최고액)	일회성 보증	n/a	
3	파생금융상품(부채)	파생금융상품형태의 보증	n/a	
4	퇴직급여 총당부채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	지자체회계기준에 관련규칙 제55조
5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기타부채(연금수급권)	n/a	제외 (기타부채로 분류)
6	군인연금 총당부채	기타부채(연금수급권)	n/a	
7	보험총당부채	일회성 보증 또는 표준화 보증	n/a	
8	보증총당부채	표준화 보증 또는 일회성 보증	+	지자체 출자기관 등 ²⁾
9	퇴직수당 총당부채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n/a	
10	기타의 기타 장기총당부채 ¹⁾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	2심패소 확정 시
11	기타부채(사회보험)	미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n/a	
12	보증채무	일회성 보증	○	
13	지급보증(원화)	일회성 보증	○	
14	지급보증(외화)	일회성 보증	+	원화와 외화의 구분
15	최소운영수입보장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16	공공손실부담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	
17	공공금융비용 지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	

주: 1) 국가회계편람(2014: 622)에 의하면 '장기총당부채'는 '퇴직급여총당부채', '연금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기타장기총당부채'로 구성된다. 기타장기총당부채는 '보증총당부채', '퇴직수당장기부채',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로 나뉘고,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는 '소송총당부채' 또는 '복구비용총당부채' 등이 있음

2) 「지자체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 기준 유지, + 추가, n/a 해당사항 없음, (+) 추가고려

중앙정부의 우발부채는 이미 논의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지금까지는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추가되어야 할 내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 예는 퇴직급여 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 지급보증(외화), 공공손실부담 및 공공금융비용지원 등이다.

퇴직급여 총당부채는 우발부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로 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총당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기관에 상환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예: 제주도 출자기관인 (주) 올

인 등).⁹⁾ 또한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는 중앙정부와 같이 2심 패소 확정 시로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우발부채는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도 공공기

관을 보증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기업을 지급보증한 사례가 있다(예: 태백시 오투리조트 등). 더 나아가 공공손실부담 및 공공금융비용지원 등이 있는데, 이를 우발부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안)

〈표 12〉 GFS 2014 기준에 근거한 우발부채 재분류(안)

내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유지	유지
담보제공자산(채권최고액)	유지	n/a
파생금융상품(부채)	유지	n/a
퇴직급여 총당부채	유지	추가
공무원연금 총당부채	제외(기타부채)	n/a
군인연금 총당부채	제외(기타부채)	n/a
국민연금부채	(준)우발부채로 관리 ¹⁾	n/a
사학연금부채	(준)우발부채로 관리 ¹⁾	n/a
보험총당부채	유지	n/a
보증총당부채	유지	추가
퇴직수당 총당부채	유지	n/a
기타의 기타장기총당부채	유지	추가
기타부채(사회보험)	유지	n/a
보증채무	유지	유지
지급보증(원화)	유지	유지
지급보증(외화)	유지	추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유지	유지(보완) (정확한 가이드라인제시, 향후 부담추정액 등)
공공손실부담	유지	추가
공공금융비용 지원	유지	추가

주: 1. 추가, 유지, 수정, 폐지 등의 산정은 현재 재무보고서 우발부채 작성기준에 근거함

1) 우발부채로 산정하면 정부의제외무로 되기 때문에 우발부채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GFSM 2014 기준에 근거하여 미래사회보장급여에 암묵적 손익부요약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9) ㈜울인(현재 달콤하우스)이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보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무보고서상 상환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중앙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가
 우발부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발부채 산정에 관해 학문적 논거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기존 국가결산보고서(중앙)/재무보고서(지방)의 우발부채내역에서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은 중앙정부의 경우, 계류 중인 소송사건, 담보제공 자산, 파생금융상품,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 기타부채, 보증채무, 지급보증(원화, 외화),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지원 등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계류 중인 소송사건, 보증채무, 지급보증(원화)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이다.

우발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은 중앙정부의 경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군인연금 충당부채이다. 또한 ‘추가’를 고려해야 할 우발부채 항목은 중앙정부의 경우,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충당부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 지급보증(외화),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지원 등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담보제공자산이 있는데, ‘추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그간 우발부채에 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국가회계편람 등에서 광의적으로 개념이 정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GFS 2014로 개정됨에 따라 우발부채 산정에 관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GFS 2014 기준에 근거하여 우발부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가 우발부채를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우발부채 산정에 관해 학문적 논거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분류기준을 재검토하고 국가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우발부채 내역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예: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기타의 기타충당부채). 이는 한마디로 우발부채의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기타부채(연금수급권)로 분류하고,¹⁰⁾ 국민·사학연금 충당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근접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발부채로 간주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공기업 등 지급보증해 준 회계실체가 파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발부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우발부채를 구체화하여 관리해야 할

10) 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이고, 부기항목으로 기록하는 나라는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페인,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이며, 산출하지 않는 나라는 브라질, 에스토니아, 멕시코이다.

필요가 있다. 최근 IMF에서는 일반정부 차원의 채무 지속가능성분석(DSA)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발부채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우발부채 관리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분류(안)

〈표 13〉 공무원·군인연금과 국민연금·사학연금의 분류(안)

구분	국가 재무제표 ¹⁾		현행 GFS 통계 ²⁾ (GFS 2001)		GFS 2014	
	부채 여부	항목분류	부채 여부	항목분류	부채 여부	항목분류
공무원·군인연금 (고용관련연금)	○	장기충당부채 중 연금충당부채	×	우발부채	○	기타부채(연금수급권)
국민·사학연금 (사회보장급여)	×	-	×	-	×	준 암묵적우발부채로 관리 (정부 의제외 아님)

주: 1) 국가 재무제표상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학·국민연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2) GFS 2001 통계상 공무원·군인연금은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학·국민연금은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GFS 2014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반 정치적 이해관계(예: 국익)를 고려하여 충당부채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다만 GFS 2014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부채는 충당부채로 분류하기는 제한된다. 그렇다고 명시적 우발부채로 분류하기도 제한된다(GFS, 문단 7.25). 왜냐하면 사회보장급여라기보다 고용관련 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중앙정부 재무제표와 GFS 2014 기준과 상이하게 된다.

GFS 2014에 의하면 고용관련 연금(employment-related pensions)¹¹⁾인 공무원·군인연금급여는 연금수급권으로 분류하고 있다(GFS, 문단 7.190~198). 또한 고용관련 연금제도는 사회보장급여와 구분하고 있는데,¹²⁾ 고용관련 연금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를 지

급하는 암묵적 순의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정상태표에 기록되지 않는다(GFS, 문단 7.252 참조). 이렇듯 GFS 통계기준에 맞춰 기타부채(연금수급권)로 처리할 경우, 일반정부 부문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국가 재무제표와는 일치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사학·국민연금 충당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등은 사회보장급여로, 국가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부담)와 동법 100조의 3(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연금은 국가와 법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동법 제46조(국가부담금)와

11) 고용관련 연금이란 보상 협정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연금수급권에 해당되어 부채로 인식한다. 반면, 퇴직급여(고용관련 연금이 아닌)와 의료보장급여 같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거시경제통계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GFS 2014, 문단 7.261).
12)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는 이러한 암묵적 우발부채는 고용관련 연금제도와 관련되는 부채를 제외한다. GFS에서 부과식(untunded) 정부 피용자 퇴직제도에 따라 발생한 추정 의무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단위의 피용자에 대한 계약상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GFS 2014, 문단 4.50).

동법 제53조의 7(국가의 지원)¹³⁾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암묵적 우발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와 고용계약관계가 아니고,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계약상의 명백한 의무가 없으므로 정부의 의제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암묵적 우발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제한된다. 하지만 일부 재정보전이 수반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암묵적 우발부채에 준하여 관리하고, GFS 2014 기준을 적용하여 부기항목에 기록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급여 암묵적 순의무요약보고서¹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분류(안)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존의 우발부채분류 방식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내역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보증채무부담행위, BTO 최소수입보장 지급금(다만, 향후 부담추정액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이다.

둘째, 기존의 우발부채분류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내역은 채무부담행위이다. 또한 예산외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 토지리턴제, 부지매입확약은 기타약정행위로 세분화하고, 기타유형에 포함된 이자비용지

〈표 14〉 우발부채 적용 요약

No	내역	재무회계운영규정('14)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비고
1	계류 중인 소송사건	√	√	
2	보증채무부담행위 ¹⁾ (지급보증)	√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3	채무부담행위		√(삭제)	우발부채로서 타당성 낮음
4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 토지리턴제 - 부지매입확약 - 기타유형 - BTO 최소수입보장		√(삭제)	'기타약정행위'로 명명 고려 공공금융비용으로 재분류 BTO 최소수입보장은 중복
5	BTO 최소수입보장지급금	√	√	향후 부담추정액 추정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6	기타의 기타장기충당부채		+	
7	보증채무		+	
8	공공손실부담		+	
9	공공금융비용 지원		+	

주: 1) 지급보증(외화) 추가로 구분 세분화 필요

1. √ 기존, + 추가

13)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14)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요약보고서

6M7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순의무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암묵적 의무의 현재가치 - 사회보장제도의 미래 기여금 현재가치
-----	--

자료: GFSM, 2014 표4.6

원은 공공금융비용지원(중앙정부와 같이)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발부채로 '추가' 분류되어야 할 내역은 기타의기타 장기충당부채, 보증채무,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지원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GFS 2014에 근거하여 재분류하여 우발부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공적연금부채(사학·국민연금충당부채 포함) 관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우발부채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재정통계기준에 맞춰 정합성이 보장된 국가전체의 재정통계를 작성함과 동시에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제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통계기준을 정비하는 중요한 이유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초이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다만 GFS 체계는 회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ustainability in EU Member States: A Guide,” European Economy Occasional Papers 200, European Commission, 2014.

IMF,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1986.

_____,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_____,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2011.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draft, 2012.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2012.

_____, *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re-publication draft, 2014.

IFAC,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2013.

Polackova, “Contingent Government Liabilities A Hidden Fiscal Risk,” *Finance & Development*, 36(1), pp. 46~49.

〈참고문헌〉

기획재정부·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편람』, _____, 『국가결산보고서』, FY 2011-2013, 각 연도.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2014.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FY 2008-2013, 각 연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훈령 제1호)」, 2014.

Carone, G. and K. Berti, “Assessing Public Debt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an@kipf.re.kr)

I. 서론

정부는 2013년에 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개편된 세제가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자 언론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였다. 적용되는 공제항목의 내용에 따라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세부담이 증가되어야 하는 고소득자’에 포함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독신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자를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공약과 다르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여권에서는 세액공제율과 항목을 조정하여 연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야권에서는 중간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¹⁾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조세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연소득 4천만원, 5천만원, 또는 7천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낮은 편인가? 높다면 얼마나 높고, 낮다면 얼마나

¹⁾ 이후 정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15년 4월 7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보완대책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저소득층의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세부담 증대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기획재정부(2015)).

낮은 것인가? 물론 세부담이 높거나 낮은 데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제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정도는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독신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간 세부담 차이에 대해서도 논리적 근거와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격차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세부담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특징을 살펴본다. 제Ⅱ장에서는 OECD(2014)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가족수당으로 구분하여 조세격차(tax wedge)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부담과 혜택의 수준을 소득수준별, 가구특성별로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013년과 2014년 소득수준별 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 분포를 비교한다. 제Ⅱ장에서 검토한 OECD(2014)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250% 범위에 대해 세부담률을 보여주는데, 본 장에서는 이를 평균 임금의 950%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2013년 세부담을 소득수준별로 검토한다. 그렇게 하면 최고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2013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도 분석에 포함된다. 그리고 동일한 소득수준에 대해 2014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산출하여 2013년의 경우와 비교한다. 이는 2013년 말의 세법개정이 소득세의 누진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논의한다.

“
**조세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연소득 4천만원, 5천만원,
 또는 7천만원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높은 편인가 아니면 낮은 편인가?
 높다면 얼마나 높고,
 낮다면 얼마나 낮은 것인가?**
 ”

II. 소득수준별, 가구 특성별 세부담과 혜택-국제 비교

1. 자료 설명

OECD(2014)는 각 국가별로 평균임금의 50~250%의 범위에 대해 조세격차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즉, 소득세(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근로자분과 고용주분), 가족수당이 각각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소득수준별 평균 조세격차(average tax wedge)를 산출하였다. 총노동비용(total labor cost)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급여(세전)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지불한 사회보험료의 합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순평균개인소득세율(net average personal income tax rate)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은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근로자분 사회보험료의 합계에서 각 가정이 수취한 가족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자가 수취한 세전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기업의 노동수요 분석에서는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조세격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에서

“
독신자 소득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50~250% 소득구간 전 구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 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는 순개인소득세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그림의 기초가 된 자료를 찾아서 독신자, 2인 가구(자녀가 없는 부부), 4인 가구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소득수준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가족수당 혜택, 그리고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을 국가별로 비교한다.

2. 소득세-국세, 지방세

[그림 1]에서는 OECD 회원국의 독신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부담률을 비교하였다. 수평축은 국가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50~250%)로 표시한 소득수준을 나타내며, 그림에 나타난 곡선은 각각 34개 회원국과 OECD 전체의 평균 실효 소득세부담률을 나타낸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말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포괄한다. 세부담률은 해당되는 소득수준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을 총노동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세부담은 소득수준과 각 가구의 인적 구성(독신, 부부, 자녀가 2명인 부부)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소득과 가구의 인적 구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과 같이 특정 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공제항목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고려되지 않은 특별공제 항목들이 적용되면 실제 각각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평균

세부담은 그림에 나타난 것보다 적게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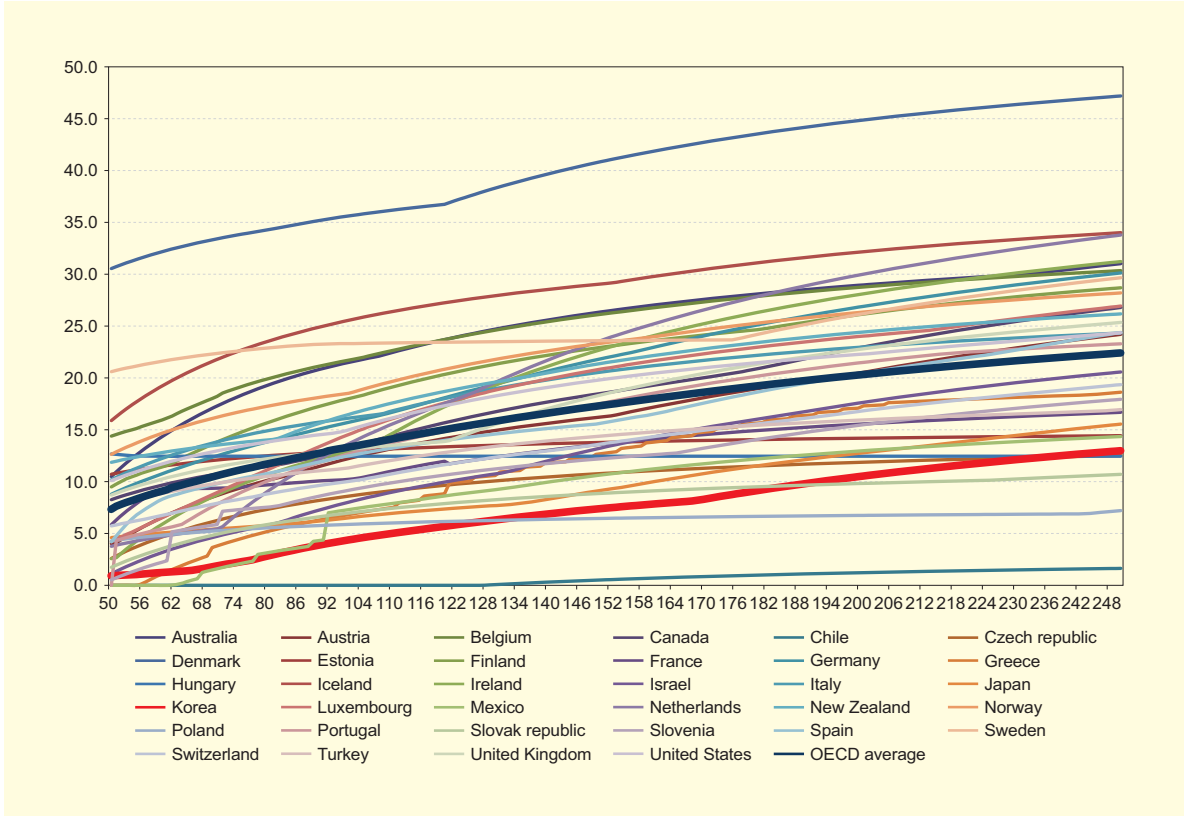
그림에서는 세전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율'과 달리 총노동비용에 대한 세부담의 비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세부담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림에 나타난 많은 곡선 중에서 붉은 색으로 굵게 표시한 것이 한국이고, 짙은 청색의 굵게 표시한 선이 OECD 평균치를 나타낸다.

평균소득은 국제표준산업분류 B-N 부문(ISIC Sectors B-N)의 상근직 근로자 평균임금을 말한다. B-N 부문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축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용역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포괄한다. ISIC의 부문 중 B-N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부문은 농림수산업과 공공부문, 교육, 보건·사회복지, 예술·오락, 기타 서비스 등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B-N 부문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은 3,983만원이었다.

[그림 1]의 독신자 소득세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림에 표시된 평균임금의 50~250% 소득구간 전 구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 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레가 전 구간에서 우리나라보다 세부담률이 낮으며, 폴란드는 평균임금 126% 이상의 구간에서 우리나라보다 세부담률이 낮다. 그 외 국가들은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부담률이 높다. <표 1>의 자료를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에는 OECD 국가의 평균 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6.4%p 높으며, 그 외 구간에서는 대략 9~10%p 정도 높다. 소득수준이 평균임금의 167%일 때 그 격차가 10.3%p로 가장 크다.

[그림 1] 소득세 부담률(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독신자

(단위: %)



자료: OECD, Tax Datasbase

〈표 1〉 소득수준별 소득세 부담률 비교-2013년, 독신

(단위: %, %p, 배)

소득수준	세부담률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한국)
	한국	OECD 평균		
50%	0.9	7.3	6.4	8
67%	1.5	10.1	8.6	7
100%	4.6	13.6	9.0	3
133%	6.7	16.4	9.7	2
167%	8.2	18.5	10.3	2
200%	10.6	20.4	9.8	2
250%	13.0	22.4	9.4	2

자료: OECD, Tax Datasbase

〈표 2〉에서는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소득수준별 세부담률을 정리하고, 이를 OECD 회원국 평균치 및 우리나라 독신자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실효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0.2~0.6%p이며,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에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한편 OECD 평균 세부담률을 보면,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가 1.7~2.9%p로 우리나라보다 크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평균임금의 50~133% 구간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가 2.5~2.9%p로 비교적 큰 편이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그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

“
 우리나라는 자녀부양으로 인한
 세부담률 절감폭이 평균임금의
 50%와 67% 수준에서는 각각 0.7%p,
 0.6%p로 낮은 편이고,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2~1.8%p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혜택이 더 크다.
 ”

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배우자공제 혜택이 적고, 역진적인 성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소득수준별 소득세부담 비교-2013년, 2인 가구
 (단위: %, %p, 배)

소득 수준	세부담률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한국)	독신-2인 가구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50%	0.7	4.6	3.9	7	0.2	2.7
67%	1.2	7.2	6.0	6	0.3	2.9
100%	4.0	11.0	7.0	3	0.6	2.6
133%	6.3	13.9	7.6	2	0.4	2.5
167%	7.9	16.4	8.5	2	0.3	2.1
200%	10.1	18.4	8.3	2	0.5	2.0
250%	12.6	20.7	8.1	2	0.4	1.7

자료: OECD, Tax Datasbase

〈표 3〉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비교하여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세부담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0.6~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치를 보면, 4인 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0.9~1.8%p 낮아, 자녀 부양으로 인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보다 중요한 차이는 소득수준별 자녀부양공제 혜택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자녀부양으로 인한

세부담률 절감폭이 평균임금의 50%와 67% 수준에서는 각각 0.7%p, 0.6%p로 낮은 편이고,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2~1.8%p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혜택이 더 크다. 한편 OECD 평균치를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자녀부양의 혜택이 크고, 소득이 많아지면 혜택이 축소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녀부양비 공제가 소득공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소득수준별 소득세부담 비교-2013년, 4인 가구

(단위: %, %p, 배)

소득 수준	세부담률		(OECD 평균-한국)	(한국/OECD 평균)	2인 가구-4인 가구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50%	0.0	3.1	3.1	-	0.7	1.5
67%	0.6	5.4	4.8	9	0.6	1.8
100%	2.2	9.3	7.1	4	1.8	1.7
133%	4.9	12.4	7.5	3	1.4	1.5
167%	6.7	15.2	8.5	2	1.2	1.2
200%	8.6	17.2	8.6	2	1.5	1.2
250%	11.4	19.8	8.4	2	1.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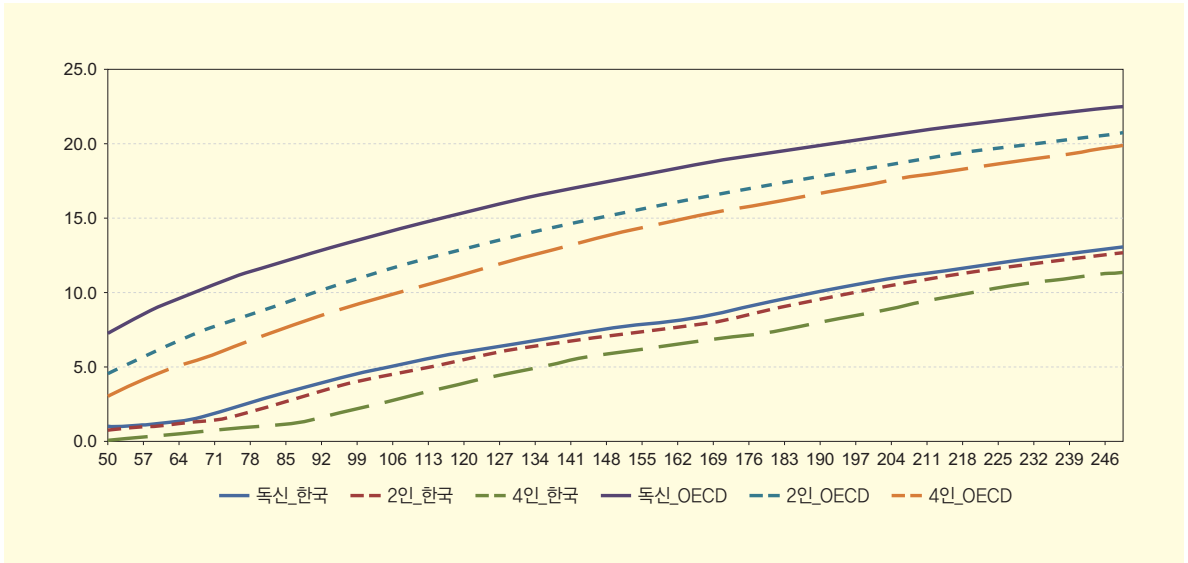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sbase

이상에서 검토한 특징은 [그림 2]에서 잘 나타난다. 이 그림에는 6개의 선이 나타나 있는데, 위의 3개는 OECD 평균 소득세 부담률을, 아래의 3개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과 가구의 구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각각 OECD 평균과 한국의 세부담률을 나타내는 3개의 선 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독신자, 가운데 있는 것이 2인 가구,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4인 가구의 세부담률을 나타낸다.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는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혜택

[그림 2] 소득세 부담률 비교-한국 vs OECD 평균

(단위: %)



자료: OECD, Tax Datasbase

을 보여주는데,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보면 배우자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며, 소득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 혜택의 크기가 작은 편이며, 최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이 더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가 소득공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세율이 상당히 낮아서 최저소득계층의 공제혜택 규모가 작아진다.

한편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보면, 그 크기는 우리나라와 OECD 평균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 세부담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이 적고, 평균 임금 수준을 전후해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세부담률과 OECD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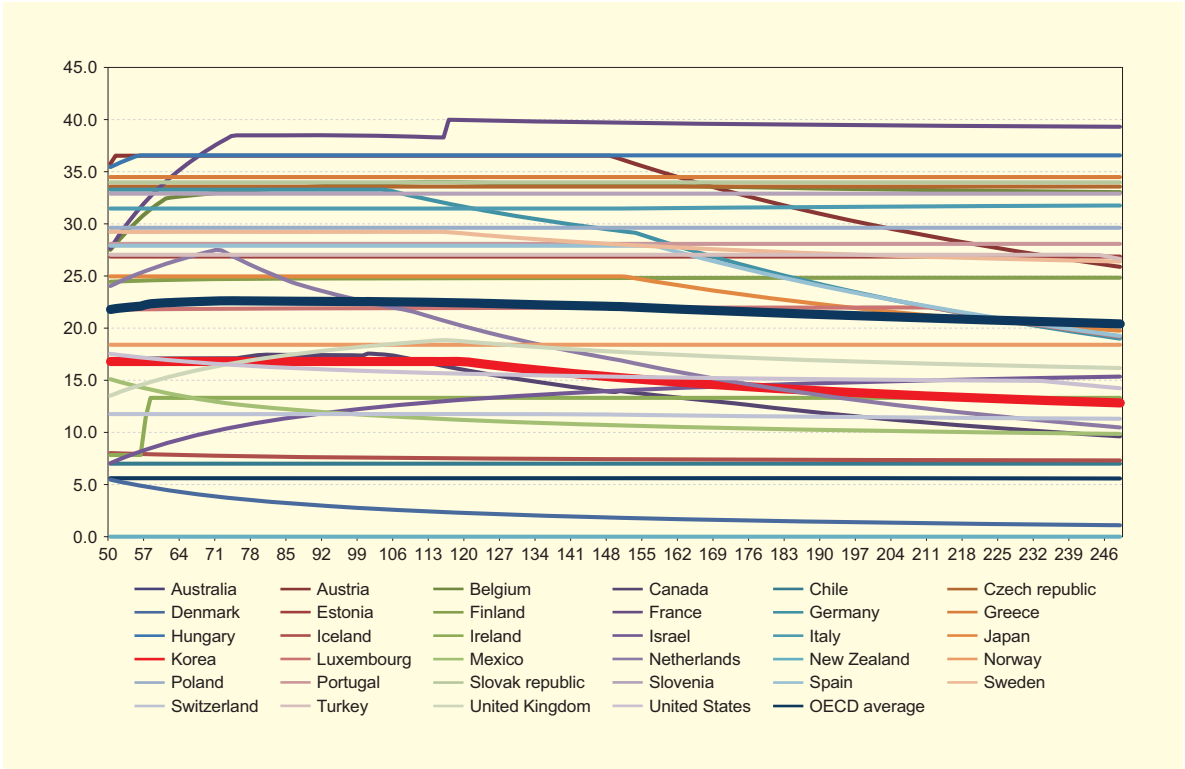
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배율로 보면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OECD 평균 세부담률이 우리나라의 7~8배 정도이고, 평균임금의 250% 수준에서는 2배이지만, 세부담률 차이는 독신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4%p인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확대되어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9.4%p가 된다. 부양가족 관련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4인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3.9%p인 데 비해 소득이 평균임금의 250%인 경우에는 그 격차가 8.4%p로 확대된다.

3. 사회보험료 부담률-근로자분, 고용주분

[그림 3]에서는 독신자의 사회보험료가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다. 사회보험료는

[그림 3] 사회보험료 부담률(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13년 독신자

(단위: %)



자료: OECD, Tax Datasbase

근로자가 납부하는 부분과 고용주가 납부하는 부분을 종합한 총부담이다. 우리나라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가 사회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소득수준이 같으면 독신자와 2인 가구, 4인 가구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없다. 다른 국가도, 일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 부담률을 보면, 소득수준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에는 평균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독신자 21.8%, 2인 가구 21.7%, 4인 가구 21.7%로 차이가 0.1%p에 불과하며,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의 부담률이 모두 20.4%로 동일

하다. 그러므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독신자의 경우만 검토한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부담은 대체로 역진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평균임금의 120%가 될 때까지 16.8%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률이 낮아져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12.8%가 된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전 구간에 걸쳐 비례적이거나 약간의 누진성, 또는 약간의 역진성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중간소득계층 이상에서 보이는 역진도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소득수준별 사회보험료 부담률 비교-

2013년 독신

(단위: %, %p, 배)

소득수준	사회보험료 부담률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한국)
	한국	OECD 평균		
50%	16.8	21.8	5.0	1.3
67%	16.8	22.6	5.8	1.3
100%	16.8	22.6	5.8	1.3
133%	16.1	22.3	6.2	1.4
167%	14.7	21.7	7.0	1.5
200%	13.8	21.2	7.4	1.5
250%	12.8	20.4	7.6	1.6

자료: OECD, Tax Database

우리나라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은 최고소득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소득이 월 398만원(201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한계를 초과하는 소득은 무시된다. 최저소득은 월 25만원이다. 의료보험은 최저 월 28만원, 최고 월 7,810만원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최고소득 한계가 없다.

OECD 평균 부담률을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21.8%인데,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22.6%로 저소득 구간에서는 약간의 누진성을 보여준다. 프랑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저소득 구간에서 상당한 정도의 누진도를 보여준다. 이후 22.6%를 유지하다가 평균임금을 넘어서면서부터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평균임금의 250% 수준에서는 20.4%가 된다. 우리나라가 같은 구간에서 부담률이 4%p 하락하는 데 비해, OECD 평균치는 2.2%p 하락한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사회보험료 부담률의 격차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는 5%p, 1.3배이던 것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격차가 더 커져서 평균임금의 133% 수준에서는 6.2%p, 1.4

“
독신자의 경우 부담률 격차가
6.4~9.4%p이던 것이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11.4~17%p로 격차가 확대된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3.1~8.4%p에서 8~16%p로 확대된다.
”

배가 되고 평균임금의 250% 수준에서는 7.6%p, 1.6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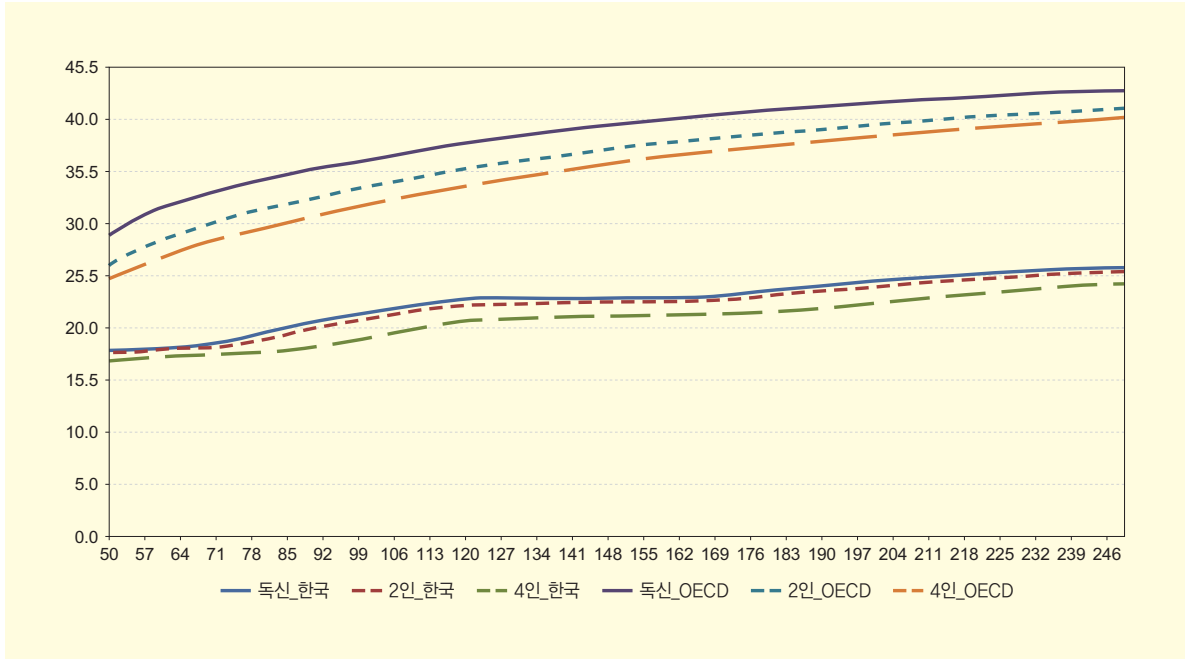
4. (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률

[그림 4]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가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총부담률’)을 정리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6개의 선 중 위의 3개는 OECD 회원국 평균 부담률, 아래 3개는 우리나라의 부담률을 나타낸다.

이 그림을 앞에서 검토한 소득세 부담률 그림([그림 2])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림 2]에서 검토한 소득세 부담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부담률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독신자의 경우 부담률 격차가 6.4(평균임금의 50%)~9.4%p(평균임금의 250%)이던 것이 사회보험료를 더하면 11.4~17%p로 격차가 확대된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OECD 평균 부담률과 우리나라 부담률의 격차가 3.1~8.4%p(소득세)에서 8~16%p(소득세+사회보험료)로 확대된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가 소득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부담률도 OECD 평균치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총부담률 격차 중 절반 정도는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데 기인하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은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소득세+사회보험) 부담률 비교-한국 vs OECD 평균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둘째, 소득세 부담률과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부담률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역진적인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신자의 경우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일 때는 세율격차가 11.4%p인데,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17%p가 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세율격차가 8%p인데, 평균임금의 250% 수준에서는 16%p로 두 배가 된다.

<표 5> 소득수준별(소득세+사회보험료) 부담률 비교-2013년 독신

(단위: %, %p, 배)

소득수준	사회보험료 부담률		(OECD 평균-한국)	(OECD 평균/한국)
	한국	OECD 평균		
50%	17.7	29.1	11.4	1.6
67%	18.3	32.6	14.3	1.8
100%	21.4	36.1	14.7	1.7
133%	22.8	38.6	15.8	1.7
167%	22.9	40.3	17.4	1.8
200%	24.4	41.6	17.2	1.7
250%	25.8	42.8	17.0	1.7

자료: OECD, Tax Database

5. 가족수당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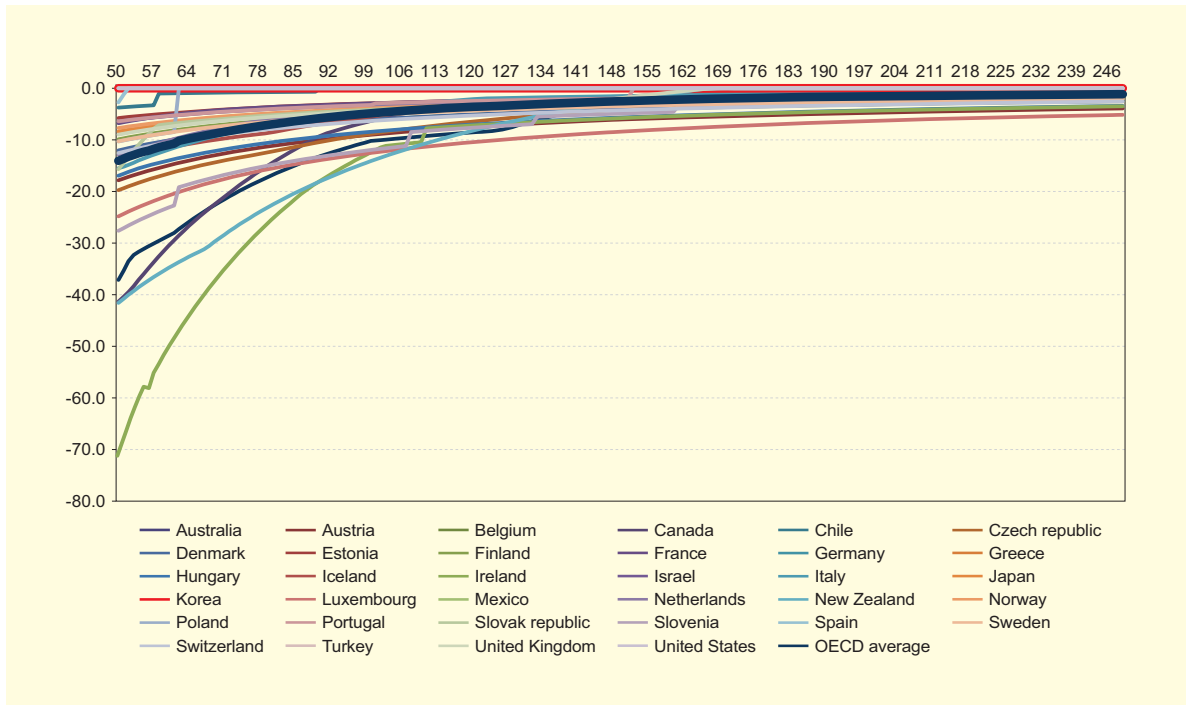
OECD(2014)에서는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지원을 의미하는 가족수당 혜택의 크기를 추정하고, 총세부담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한 순부담률을 산출하였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세부담에 포함하였으며, 세금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세금보다 수당이 많으면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만을 가족수당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0~5세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OECD(2014)에서는 6~11세의 자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가족수당은 자녀 부양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6~11세의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 가족수당을 살펴 보면 [그림 5]와 같다.

우리나라 외에도 멕시코와 터키, 미국에서는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페인에서는 평균임금의 53%까지만 가족수당 혜택을 받고, 소득이 그 이상이면 혜택이 없다.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 평균적으로 노동비용의 13.2%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67%인 경우에는 9.4%, 100%인 경우에는 4.9%로 평균임금의 67%를 넘어서면서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200%와 250%인 경우 평균

[그림 5] 가족수당 혜택률(총노동비용 대비 비율)-2013년 4인 가족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받는
 가족수당을 차감한 근로자의 순부담이
 근로자가 수령한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혜택률은 각각 총노동비용의 1.5%와 1.2%이다.

6. 순평균개인소득세율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가족수당을 모두 종합하여 순조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한다. OECD에서는 평균조세격차(average tax wedge)와 순평균개인소득세율(net average personal income tax rate)로 구분하여 순조세부담을 산출하였다. 평균조세격차는 소득세 부담과 근로자분 사회보험료, 고용주분 사회보험료의 합계에서 가족수당을 차감한 금액(순부담)이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와 고용주분 사회보험료의 합계를 의미하는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한편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근로자가 받는 가족수당을 차감한 근로자의 순부담이 근로자가 수령한 세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둘 중 후자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실효세율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세부담에 포함시키고 가족수당 혜택을 차감하여 순세부담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음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세부담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다. 편의상 다음에서는 ‘순평균개인소득세율’을 ‘순평균세율’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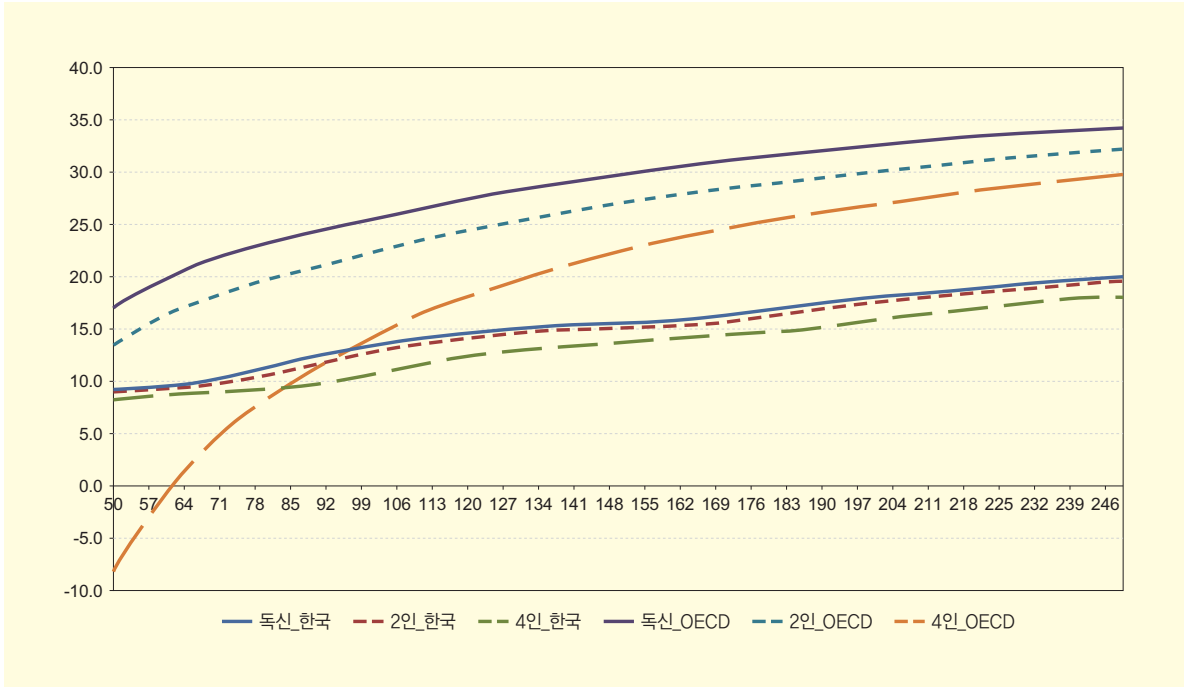
[그림 6]에서는 독신자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의 우리나라 순평균세율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하였다. 우리는 앞서 [그림 4]에서 가족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세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총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독신자와 2인 가구의 경우 부담률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부담률 곡선의 모양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신자와 2인 가구는 가족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은 가족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세부담률과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없으므로, 4인 가구의 부담률 곡선의 모양도 앞의 [그림 4]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자녀수당 명목으로 현금보조를 하는 국가들이 많고, 그 보조는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OECD 평균치를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60% 이하인 경우에 가족수당이 소득세와 근로자분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부담보다 많아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이 0보다 작게 된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소득에서는 순평균세율이 -7.5%이다. 이와 같은 가족수당의 효과로 인하여 소득이 평균임금의 83% 이하인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순평균세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고, 그 이상의 구간에서는 우리나라가 낮다.

소득수준별로 4인 가구의 우리나라 순평균세율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는 OECD 평균치가 15.8%p 낮고,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5.5%p 낮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100%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보다 3.5%p 낮고, 평균임금의 167% 수준에서는 10%p, 200%와 250% 수준에서는 각각 11.1%p와 11.6%p 낮다. 배율로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133% 이상 250% 구간에서 OECD 평균치가 우리나라의 1.5~1.7배이다.

[그림 6] 순평균개인소득세율-한국 vs OECD

(단위: %)



자료: OECD, Tax Datasbase

〈표 6〉 소득수준별 순평균개인소득세율 비교-
2013년, 4인 가구

(단위: %, %p, 배)

소득수준	순평균개인소득세율		(OECD 평균-한국)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50%	8.3	-7.5	-15.8	-0.9
67%	8.9	3.4	-5.5	0.4
100%	10.7	14.2	3.5	1.3
133%	13.2	20.1	6.9	1.5
167%	14.3	24.3	10.0	1.7
200%	15.8	26.9	11.1	1.7
250%	18.2	29.8	11.6	1.6

자료: OECD, Tax Datasbase

III.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분포-2013년 vs 2014년

1. 자료 설명

제 II 장에서의 분석은 두 가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소득수준을 50~250% 수준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2013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평균임금의 900% 수준이 거의 되어서야 과세표준이 3억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에서의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950%까지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세부담을 산출하였다.

“
**정부는 2013년 말에
 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소득공제제도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귀속소득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었다.**
 ”

두 번째는 최근의 제도 개편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3년 말에 소득세제를 개편하여 소득공제제도의 상당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 귀속소득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소득세의 누진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전의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2013년 분석에 사용된 동일한 소득수준에 대해 2014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세제를 적용한 경우의 소득수준별 실효세부담을 산출하여 2013년 세부담률과 비교해 본다.²⁾

세부담 산출 방법은 OECD(2014)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가족수당의 경우, 우리나라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자녀수당을 지급하는데, OECD(2014)에서는 6~11세의 자녀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여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³⁾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산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자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였다. 즉, 근로소득 규모와 가족의 구성에 대한 정보

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는 모두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 기부금, 교육비 등 근로자의 행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제항목들은 적용하지 않았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달라진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근로소득공제는 2013년에는 500만원 이하에 대해 80%가 적용되었는데, 2014년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70%가 적용된다. 그리고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13년에 50%, 2014년에 40%가 적용된다.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에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분에 10%가 적용되고,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분에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에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에는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로소득공제의 축소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증가하도록 하여 소득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추가 공제 중에서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폐지되고, 그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모든 부양대상 자녀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셋째 자녀부터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세율체계에도 개편이 있었다. 2013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14년에는 1억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다.

2) 2014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세법개정은 2015년 4월 7일에 국회에 제출한 보완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2013년 말의 세법개정을 말한다.
 3) OECD(2014)에서 피부양자인 자녀의 연령을 6~11세로 한정된 것은 두 명의 자녀가 조세나 가족수당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가구 구성을 가정한 것이다. 연령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OECD 분석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은 이전과 같으나 공제한도를 개편하였다. 2013년에는 공제한도가 일률적으로 50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최고한도가 66만원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66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가 축소되어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3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한도이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 하한과 상한이 2013년 25만원, 398만원에서 2014년 26만원, 408만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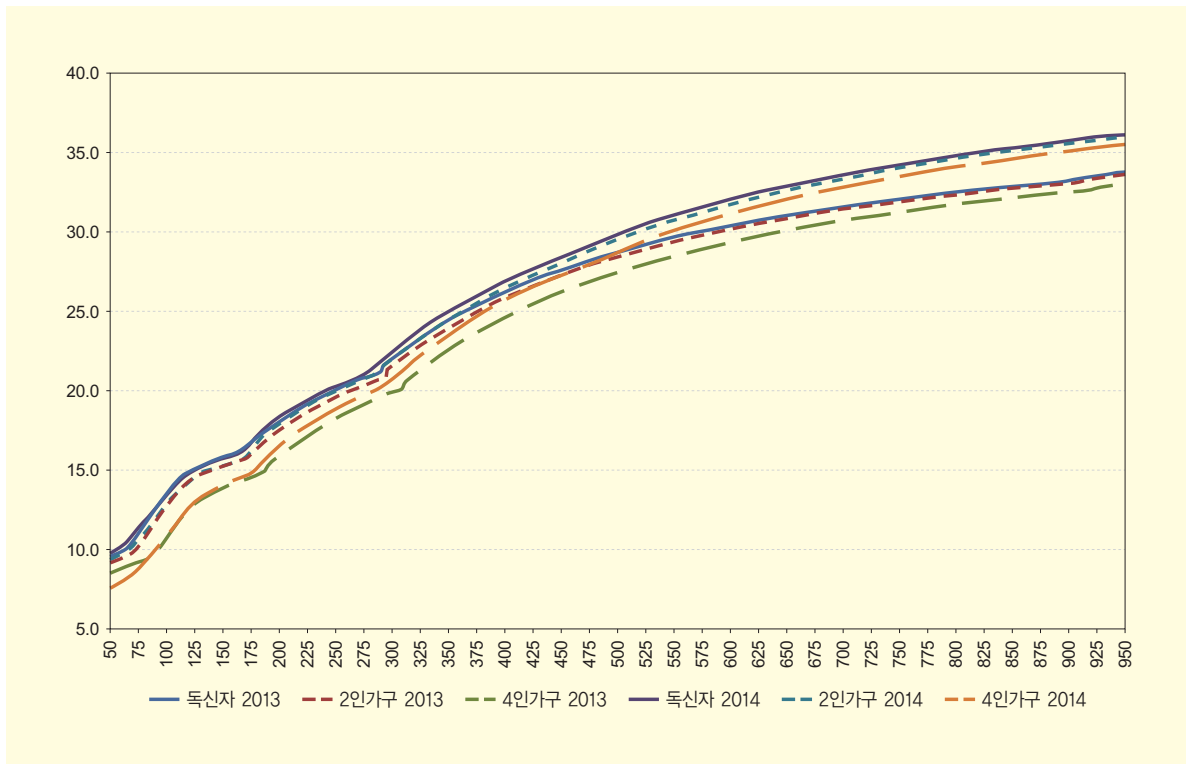
분과 고용주분의 요율이 각각 2.945%에서 2.995%로 인상되었다.

2. 순평균세율 비교-2013 vs 2014년

[그림 7]은 우리나라 평균임금(2013년 기준)의 50~950% 구간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의 순평균세율을 계산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는 6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 아래 쪽에 있는 3개의 선은 2013년의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을 나타내며, 위쪽에 있는 3개의 선은 2014년의 각 가구의 순평균세율을 보여준다.

[그림 7] 순평균개인소득세율¹⁾-한국 2013 vs 2014

(단위: %)



주: 1)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먼저 2013년의 경우를 보면, 평균임금의 250%를 넘어서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순평균세율도 계속 높아진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250%일 때 순평균세율이 독신자 20.0%, 2인 가구 19.6%, 4인 가구 18.2%인데 소득이 계속 증가하여 평균임금의 350%를 넘게 되면 독신자 가구의 순평균세율이 25%를 넘게 된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410%를 넘으면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도 25%를 넘게 된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950%인 경우 독신자 가구의 순평균세율은 33.8%,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은 각각 33.7%와 33.1%가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 편이어서 소득수준에 따라 0.17~0.62%p 정도이고, 자녀공제는 0.55~2.07%가 된다.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혜택은 평균임금의 100~300% 구간에서 가장 크고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에서는 적은 편이다. 평균임금의 700% 이상인 최고소득계층에서는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평균

임금의 50~67%인 최저소득계층보다 작다(〈표 7〉 참조). 2013년과 2014년 모두 세부담률이 비연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세율구간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의 순평균세율을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각종 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독신자 가구와 2인 가구는 일부 구간에서 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약간 축소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2014년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100~133% 구간에서 세부담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에서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평균임금의 67%에서 독신자의 세부담률 증가폭이 0.7%p로 큰 편이다.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부담률 증가폭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300%인 경우에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이 0.5%p 정도 상승하고, 평균

〈표 7〉 2013~2014년의 세부담 변화¹⁾

(단위: %, %p, 백만원)

소득배율	순평균세율 변화			부양가족 혜택				세전소득
	2014~2013			배우자공제(2인-1인)		자녀(2인) 공제(4인-2인)		
	독신	2인	4인	2013	2014	2013	2014	
50	0.29	0.28	-1.08	0.22	0.24	0.75	2.10	19
67	0.70	0.36	-0.74	0.32	0.65	0.70	1.81	27
100	0.02	0.02	0.02	0.62	0.62	2.07	2.07	40
133	0.03	0.03	0.03	0.47	0.47	1.56	1.56	53
167	0.26	0.08	0.08	0.37	0.55	1.24	1.24	67
200	0.34	0.34	0.59	0.50	0.50	1.66	1.41	80
300	0.49	0.49	0.89	0.48	0.48	1.65	1.24	119
500	1.12	1.09	1.26	0.29	0.31	0.97	0.80	199
700	2.03	2.01	2.13	0.21	0.22	0.69	0.57	279
950	2.35	2.35	2.49	0.17	0.17	0.55	0.42	378

주: 1)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임금의 500%인 경우에는 1.1%p, 평균임금의 700%에서는 2%p, 평균임금의 950%에서는 2.4%p 정도 순평균세율이 상승한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수준별 순평균세율 구조가 비교적 크게 변화된다. 독신자 가구와 2인 가구도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누진성이 강화되지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누진성 강화 효과가 더 크다. 특히 소득이 평균임금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독신자나 2인 가구와는 달리,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은 하락한다. 평균임금의 50%인 경우에 하락폭이 1.08%p로 가장 크고, 평균임금의 67% 수준에서는 0.74%p 하락한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순평균세율 하락폭이 축소되어 평균임금의 80% 부근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된다. 평균임금의 200% 부근에서는 순평균세율의 증가폭이 0.6%p가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순평균세율의 증가폭이 커져서, 평균임금의 500% 수준에서는 1.3%p가 된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700%인 경우 4인 가구의 순평균세율 증가폭은 2.1%p, 평균임금의 950%인 경우에는 순평균세율 증가폭이 2.5%p가 된다.

2013년과 2014년의 부양가족 혜택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배우자공제 혜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부양에 따른 추가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효과에는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4인 가구의 자녀 부양에 따른 순평균세율 하락폭이 2013년에는 0.55(평균임금의 950%)~2.07%p(평균임금의 100%)이던 것이 0.42(평균임금의 950%)~2.1%p(평균임금의 50%)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3년에는 평균임금의 100~300% 구간에서 1.24~2.07%p

“
**독신자 가구와 2인 가구도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누진성이
 강화되지만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누진성 강화 효과가 더 크다.**
 ”

로 자녀부양 혜택의 크기가 크고, 저소득층인 평균임금의 50%, 67% 수준에서 각각 0.75%p, 0.7%p로 혜택이 적은 편이었다. 한편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임금의 500% 구간에서도 0.97%p의 세부담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임금의 700%와 950% 수준에서는 각각 0.69%p, 0.55%p의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최저소득층에서 세부담 절감효과가 2.1%p로 가장 크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수준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평균임금의 500% 수준에서는 0.8%p, 700% 수준에서는 0.57%p, 950%에서는 0.42%p의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요약해 보면, 소득수준이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가 크고, 100~200% 구간에서는 2014년에도 2013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세부담 절감이 발생하고, 그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효과가 축소된다.

위 그림과 표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세부담 산정 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사회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에 수많은 특별공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2014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나 그러한 변화의 효과는 위 그림과 표

“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 격차에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전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다.**
 ”

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략적으로 추측해 보면, 소득 공제제도가 적용되던 특별공제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소득세 한계세율이 12% 또는 15%인 경우에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더 많은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이고,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이다. 본 절의 추정방법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되는 소득수준은 독신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62%(2,450만원), 2인 가구는 평균임금의 67%(2,670만원), 4인 가구는 평균임금의 77%(3,070만원)이다.

I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41.8%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닌데, GDP 대비 소득세 부담 비율은 낮은 편이다. 소득세 세율 구조를 보면, 6.6~41.8%로 5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간

변화에 따른 세율 변화 폭이 커서 누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니계수 등의 지표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 격차에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전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다. 4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순평균세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금보조금인 가족수당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우리나라가 낮다.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4.5~12.6%p의 세부담률(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부양가족 혜택을 보면,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의 혜택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한편 자녀부양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의 크기는 OECD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녀부양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보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뿐만 아니라 자녀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찍부터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그에 대응하여 조세와 가족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갖춘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에 있어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OECD 평균치를 보면 배우자공제와 자녀양공제, 가족수당 혜택은 모두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

증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축소되며,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의 배우자공제와 자녀부양에 따른 소득공제는 모두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띠고 있어 역진적인 효과가 있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1%p만큼 상승할 때 평균세율이 몇 %p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세의 구조적 누진도를 보면, 평균임금의 50~67% 구간에서 OECD 회원국의 2012년 소득세 구조적 누진도 평균치가 독신자 0.193%p, 4인 가구 0.272%p로 가장 크다. 그 다음이 평균임금의 67~100% 구간으로 0.125%p, 0.177%p이며, 100~133% 구간은 0.101%p, 0.121%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누진도가 낮아진다. 평균임금의 300~500% 구간에서는 각각 0.021%p, 0.051%p가 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저소득구간에서의 소득세 구조적 누진도가 상당히 낮다. 2012년의 경우 평균임금의 50~67% 구간에서의 구조적 누진도는 독신자와 4인 가구가 각각 0.033%p, 0.034%p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구간별 누진도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임금의 300~500% 구간에서도 0.039%p, 0.041%p의 누진도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구조적 누진도가 가장 큰 구간은 독신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60~100% 구간이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133%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도 구조적 누진도가 0.1%p를 넘지 않는다.⁴⁾ 문제가 되는 2014년의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OECD 회원국은 저소득층에서 세부담과 혜택의 누진도가 높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
**세제와 가족수당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의 일반적인 흐름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

는 점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제와 가족수당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의 일반적인 흐름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징수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이 평균임금의 60%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평균임금의 60%는 우리나라의 2013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약 3천만원 정도 된다.

다섯째, 2014년에 새로 적용되는 세법개정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조정하며, 자녀부양에 따른 소득공제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자녀를 부양하는 4인 가족의 세부담 누진성을 많이 강화하였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와 사회보험료공제만을 고려한 경우 중간소득계층에서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으며, 저소득계층에서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4인 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고소득 계층에서는 모든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검토하지 않은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특별공제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효과

4) OECD(2014)의 소득세 구조적 누진도(structural tax progression) 분석과 Paturot, Mellbye, and B. Brys(2013) 참조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변화 효과를 추측해 보면, 소득공제제도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소득세 한계세율이 12% 또는 15%인 경우에 특별공제에 따른 세부담에 변화가 없고, 그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높은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특별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본고의 계산에 따르면 대체로 세전소득이 2,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한계세율이 6%에서 15%로 전환된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보완대책」, 2015. 4. 7.

OECD, *Taxing Wages 2014*, OECD Publishing, 2014.

Paturot, D., K. Mellbye, and B. Brys, “Average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ax Wedge Progress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No. 15, 2013.



정책연구



-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박명호 · 전병목
-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박명호 · 정재호
-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홍성훈 · 강성훈 · 허경선
-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홍성훈 · 안종석
-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재호 · 강성훈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전병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득분배 실태를 최상위 계층의 소득집중도를 통해 파악하는 연구와 소득분배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인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그 변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지니계수나 5분위배율로 대표되는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는 상위 1% 또는 상위 0.1% 등과 같은 최상위 소득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가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ketty(2001)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집중도 추정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론은 최상위 소득자들의 소득분포에 대한 가정을 한 뒤, 이 가정을 바탕으로 특정 소득분위의 경제소득 및 그 이상의 소득 누적금액을 보간법(interpolation) 통해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집중도 분석에 앞서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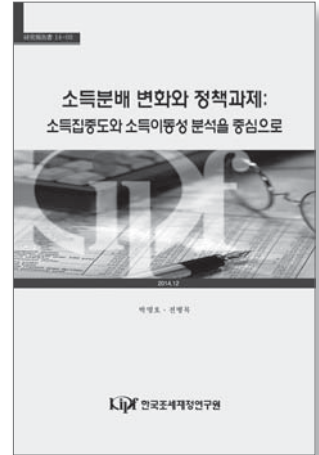
분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Piketty(2001)를 비롯한 다수의 소득집중도 연구에서는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분포가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반면, 검증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상단은 파레토 분포에 의해 잘 근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tkinson(2005)에서 사용한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 2007~2012년 동안 우리나라 상위 5%의 소득집중도는 27.6~29.6%,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11.0~12.2%, 상위 0.1%는 3.8~4.5%, 상위 0.01%는 1.5~1.7%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득집중도의 추이를 보면, 2011년까지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로 전이된 시점인 2009년에 전년도에 비해 미약하게 하락하여 일시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지만, 이후 2010년과 2011년의 소득집중도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최상위 소

득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2년에 다시 2010년 수준보다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2012년에 들어서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2008년 또는 2009년부터 소득분배가 계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기존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와는 다른 소득분배 실태를 보여준다. 이런 소득분배 지표들의 추이는 기존의 소득분배지표가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중간 소득계층의 소득비중이 낮아지고 최상위계층 및 하위계층의 소득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하위계층의 소득비중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는 소득분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변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분배지표를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집중도의 국제 간 비교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과세 단위가 다르고, 이용 가능한 통계의 품질이나 납세순응 행태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소득분위의 소득집중도 추정치를 놓고 국가 간 서열을 매기는 방식의 비교분석은 매우 제약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의 추세가 국가 간에 유사한지 혹은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등의 국제비교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득집중도 추이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근로소득세 신고자료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및 분류과세되고



B5변형/ 154면
2014. 12.

있는 다른 유형의 자료도 인별로 결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긴 소득집중도 추정치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과정이나 외환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및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 이전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해서도 인별 합산 작업을 수행하고 현행 『국세통계연보』보다 더 세분화된 소득구간별 통계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과세대상 소득 합계뿐만 아니라 소득유형별로 소득금액을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의 소득집중도 추이를 별도로 분석할 수 있고,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변화가 어느 소득유형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 추이 등 소득분배 실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소득이동률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이동률에 대한 분석 결과 각 소득계층 중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비율은 증가하고 중산층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이동률 역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계층 유지확률은 증가하고 중산층의 유지확률은 감소하여 소득구조의 고착화를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효과를 배제한 근로가능계층에 대한 분석에서 저소득계층 유지확률은 크게 낮아졌으며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계층 상향이동률이 증가하고 잔류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계층에서 소득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에 대한 정책노력과 근로가능가구에 대한 정책방안은 차별화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유도보다는 노후소득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산층이 감소하는 소득양극화 현상은 근로계층과 은퇴계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계층 잔류율이 높아지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소득상위 10% 계층의 잔류율은 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의 잔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만 동일한 가계가 계속적으로 같은 계층에 있을 확률은 높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이 상위 소득 40%(즉, 60분위 이상)에 포함될 확률은 연간기준 94%(중기기준 89%) 내외를 보여 상당한 소득 지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위 10% 소득계층의 계층 변화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전체 소득구조에서는 높은 소득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

한편, 연간기준 소득계층 이동률은 중기 이동률과 비교할 때 동일 소득계층 잔류비율을 과대평가


하고 상·하향 이동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생주기에 따른 구조적 소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중기 이동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변화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분석에서는 소득 측정 오차를 고려함으로 인해 추정의 편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초기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소득 변수의 영향력은 저소득층 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저소득층이 빈곤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분포 개선을 위해서는 빈곤탈출 시점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부분 빈곤선 근처에서 급격하게 축소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조정과 함께 저소득계층의 시장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초기 교육수준과 분석기간 내 교육연수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소득증가율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취업 전 교육확대 또는 평생 교육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노력은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빈곤탈출 유도 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득증가에는 양적지표인 취업자 수 증가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의미하는 임금근로 확대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적극적인 임금일자리 확대 노력을 통해 소득분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소득계층 이동성을 해석 시 근로가능계층과 은퇴계층에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근로가능계층의 경우 노동시

장 참여를 통해 양호한 소득이동성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은퇴계층의 빈곤층 고착 확률이 높으므로 각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은퇴계층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획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연금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노후자금 준비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소득계층 고착화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횡단면 분석상 계층 간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소득증가율 결정에 노동시장 참여자 규모와 사무직 직종 여부가 중요한 요인인바, 공정한 과세노력을 통해 기존 조세제도 등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상위 10% 계층의 잔류율이 중간 소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소득 계층이 특정 집단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러한 소득이동률이 상위 1%, 0.1%, 0.01% 등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나, 부의 대물림이 아닌 혁신 등을 통한 성과향상에 의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도달한 것이라면 단년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추가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보다 소득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개발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창의성 있는 사람들의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고소득자들이 기존 과세체계에 성실하게 순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세 등 내재된 사회적 재분배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이동률이 낮고 능동적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나 상속·증여에 의해 최상위 소득계층에 위치하고 있다면 과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요구가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용 자료의 한계로 상위 1%, 0.1%, 0.01% 등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이동률이나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02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김학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 정부들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위상은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의 한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가운데, 고용유발 효과 및 경제 전반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 산업이 보다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므로 산업별 실효세율 비교를 통해 차별적 지원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산업별 차별적 조세체계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보고 전반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1년 이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우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이 우리보다 낮거

나 지속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마다 수행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특례제도의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왔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에 의해 나타나는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의 차이는 동일한 소득규모의 법인에 대해 세부담을 달리한 결과물이다. 이는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산업에 낮은 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별 차별적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산업별 조세격차는 자원배분을 왜곡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훼손한다. 경제의 효율성 훼손은 성장을 저해하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다른 산업들로 파급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이러한 차별적 조세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때 산업별로 차별적인 조세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업별 차별적 조세제도로부터 긍정적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산업과 최적 수준의 세율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세율수준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2000년 이후의 산업별 법인세 조세격차를 아래와 같이 국제통계연보의 산업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는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보다 높으면서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조세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는 국가들로는 미국 이외에 덴마크, 독일, 영국이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스페인 등은 조세격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큰 변동 없이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별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산업별 조세격차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율이 높을수록, 실질 GDP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노력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조세격차가 전반적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노동시장 규제가 낮을수록, 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산업별 조세격차



B5변형/ 115면
2014. 12.

가 낮을수록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경우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실질 GDP 성장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GDP 성장률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성장은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또는 노동시장의 규제가 약할수록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분석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추정결과를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는 OECD 국가들 중 11

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제조업의 성장세가 서비스 산업의 고용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추정계수는 노동시장 규제 정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추정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며 법인세율 인하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도의 제고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과거 제조업의 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 왔으나 제조업 성장에 기인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OECD와 같이 경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법인세 정책 방향은 먼저 법인세 신고법인의 22%에 불과한 제조업 종사 법인들이 70.8%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의 차별적 조세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현재의 법인세 관련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현재 총부담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17%가 산출세액 기준 산업별 조세격차 수준인 5.2% 수준으로 낮아지면, 약 1.4%포인트 정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경우 약 2.6~5.3%포인트의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기존에 특정산업에 주었던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산업별 조세격차를 축소함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가 상쇄하고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별 조세격차를 17%에서 5%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발생한 세수증가분을 재원으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정도 세수 중립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한다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약 1.8%포인트 제고될 수 있으며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최소 0.8% 정도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세수중립적 법인세율 인하에 의해 약 2.5~3.8%포인트 확대되고 산업별 조세격차 축소에 따라 약 0.7~1.8%포인트 정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은 조세 왜곡을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비과세 감면제도도 이 원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혜택은 축소되어야 하고 정책대상자의 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업종들만을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진화가 무한히 지속되어야 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경제 전체의 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는 제조업 성장 중심의 조세제도에 의해 확대된 산업별 조세격차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별 차별적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지원받은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

적 효과보다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 지원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세수감소와 함께 또 다른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제도의 정책대상자를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적자본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 및 인력개발 이외에 시장관련 Database, 새로운 건축디자인, 광고, 경영자문, 시장조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투자활동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수준의 조세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지출을 투자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물적 자본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전통적 제조업종보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직접적 혜택의 확대와 함께 제조업종과의 조세격차 축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세수감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성향이나 특정한 경제행위 수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지위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본은 물적자본과 달리 무형자

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03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과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와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인 조세경쟁 아래에서 국내외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과세기반이 협소하여 충분한 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과세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이라는 잠재

적인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파급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한 준비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 시 반드시 언급되는 세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그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모색해 놓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태와 그 변화요인을 유효 부가가치세율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세부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를 통해 추정하고, 그 결과를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기본분류 기준 투입산출표가 발표되는 연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분석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역진적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현행 면세제도 중 비중이 큰 4가지 면세 유형(미가공 식품품,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금융·보험용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후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분석할 때 왜 유효세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예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 등 경제적·사회적 정책목적으로 인해 특정 경제활동 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면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함께 발생하여 모든 거래가 정상 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면세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세부담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목세율이 아닌 유효세율을 통해 세부담을 산출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활용하는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세율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상 산업구분이 가장 세세한 기본분류를 대상으로 유효세율을 산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동 방



B5변형/ 176면
2014. 12.

법론의 한계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들과 산업연관표상의 기본분류를 연계하여 각 품목별 유효세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한 유효세율을 각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액에 적용하여 소비항목별 유효 세부담을 도출한 후 모든 소비항목에 대하여 합산함으로써 가구별 유효 세부담을 추산하였다. 이런 작업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및 2012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 추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의 역진성은 경제적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능력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높고, 높은 소득분위에서 낮은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세부담 비율을 과세베이

스에 해당하는 소비지출 대비로 산출하면 이러한 역진적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소득 구간에서는 누진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능력을 소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세부담의 역진적인 현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에서도 드러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논쟁은 경제적 능력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 모두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세부담의 분포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 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유효 세부담 분포는 특정 연도에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모든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왔고, 면세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비중이 낮아지는 전반적인 소비구조 변화와 더불어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고령가구 비중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저소득 및 저소비 분위를 중

심으로 크게 증가해옴에 따라 저분위의 유효 세부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소득 및 소비 1분위에서 소득 대비 유효 세부담은 최근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은 낮지만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면세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했는데 미가공식품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가공식품에 대한 면세는 세부담 비율뿐만 아니라 세부담 경감 규모 측면에서도 저소득 및 저소비 계층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허용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교육용역의 경우 소득분위 및 소비분위가 올라갈수록 세부담 경감액 규모는 커지면서 소비지출 대비 세부담액 비율의 감소폭도 대체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면세제도를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정비해 나아간다면 미가공식품이나 의료·보건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이나 금융·보험용역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세수증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금융·보험용역보다는 교육용역의 정상 과세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05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의 요약 및 정책시시점으로 필자 개인 의견입니다.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제 조정의 경제적 효과

홍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수요는 에너지원의 상대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가격구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환율 등 국제적이고 거시적인 변수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세정책도 그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요의 전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으로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소비세, 환경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에 비해 주요 발전 에너지원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 규제로 설정되는 전기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전기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사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연탄, 원자력 등의 주요 발전 에너지원에 대해 지금까지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함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활동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마도 과거에는 발전 에너지원에 과세하지 않고 발전 단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고자 정책적으로 그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전기로 쏠리면서 전기 수급이 불안정해 지고 전기 수요 피크시기마다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즉 원자력, 유연탄 등의 발전 에너지원에 대해 비과세하여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 당위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발전 부문에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최종 소비자 또는 기업이 전기를 소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전기에 대한 소비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기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비자와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가격신호를 보내 전기 수요를 조절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소비세제도의 단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더 큰 실효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생산된 전기에 대해 일정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높아 동일한 열량을 사용하여 더 많은 전기

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더라도 더 효율적인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발전 단계에서 에너지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화력 발전용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우라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 여러 발전 에너지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을 차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발전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발전 과정에서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전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면 에너지원에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의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발전 연료에 과세하여 발전 사업자들이 더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전기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나 기업에 전기 수요를 조절하도록 가격신호를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전 에너지원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석탄세와 원자력세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석탄 화력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 39%를, 원자력은 약 30%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발전용 석탄(유연탄) 및 원자력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주요국의 과세 사례를 보면,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이 원자력 발전에 과세하고 있다.

먼저 석탄세 도입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먼저 열



B5년형/ 135면
2014. 12.

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용도 및 에너지원에 따른 세율을 조정한다. 여기서 시나리오별로 세율을 계산할 때는 총에너지세수입에 변화가 없고 비수송용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 시나리오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킬로그램당 30원에서 97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 화력 발전 사업자들은 약 2조 4천억원에서 7조 7천억원까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증가하는 세금 수입을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데 쓰도록 전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 유연탄 과세로 인해 유연탄의 평균 가격이 약 21%에서 69%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어서 원자력세 도입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발전 연료

인 우리나라에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과세한다. 둘째,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과세하는 방법이 있으며, 스웨덴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정액(lump-sum)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으며, 프랑스가 이렇게 과세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와 둘째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과세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단가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2012년 평균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수입단가의 100%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율은 그램당 약 954원이 되고, 세수입은 약 7천 1백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비용에서 연료인 우라늄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로 상당히 작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종 전기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우리나라의 그램당 세율을 더욱 높게 설정해야 한다. 한편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에 과세하는 경우 전력량 단위인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설정한다. 앞의 석탄세 시나리오 분석에서처럼 천연가스의 세율을 기준으로 천연가스 열량과 전기 열량에 비례하도록 전기의 세율을 산정하면 킬로와트시당 11원이 되고, 세수입은 2012년 원자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약 1조 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세 및 원자력세 도입 방안을 종합하여 네 가지 종합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첫 번째 종합 시나리오에서는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30원, 우리나라 그램당 954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로 인해 발전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그대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된다면 요금은 평균적으로 약 6.7%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종합 시나리오에서는 유연탄

에 킬로그램당 30원, 원자력 발전 전기에 킬로와트시당 11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요금으로 그대로 전가되면 전기요금은 약 8.7%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두 시나리오에서는 앞의 두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각각 이들과 동일한 세수입을 유지하는 전기소비세를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즉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가 이미 도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폐지하면서 새로 전기소비세를 도입하되 세수입에 변동이 없도록, 전기소비세의 세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연탄 및 우리나라 과세 시나리오와 세수 중립적인 전기소비세의 세율은 킬로와트시당 약 6.6원이고, 두 번째 유연탄 및 원자력전기 과세 시나리오와 세수 중립적인 세율은 킬로와트시당 약 8.6원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약 0.15%p에서 0.19%p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IPR**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07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원천국 과세회피를 중심으로

홍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납세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그로 인한 세금 감소가 법의 원래 취지나 국민들의 도덕적 정서와 잘 맞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부른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 빈번히 일어난다. 나라마다 다르고 복잡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맹점을 찾아 이용하면 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투자펀드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업 및 투자 행위를 벌이기 때문에 국제조세회피를 시도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남용, 조세회피처 소득 유보, 거주지 과세이연 등이 대표적인 국제조세회피의 유형이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기업이 적극적으로 세무 전략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권,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 여론이 의회에서의 진상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애플과 구글은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라는 세무 전략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납세의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이익을 유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나 투자금을 중개하는 자회사로 하여금 원두 가격과 이자율을 시장에서와 다르게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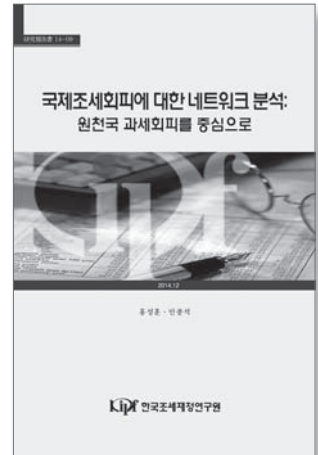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는 서울에 소재한 업무용 빌딩에 투자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을 얻으면서, 미국에 있는 펀드가 벨기에 자회사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전환하고 소득의 송금 대상도 미국 법인에서 벨기에 법인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내야 하는 세금을 회피하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투자하면서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차례로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왔다.

한편 미국계 부품소재 기업인 코닝과 프랑스로 에너지 기업인 토탈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들의 조세회피 행위는 전형적인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하는데, 본사에서 우리나라의 관계회사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나라에 설립한 회사를 경유하여 투자함으로써 경유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여온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최적화 기법을 응용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한다. 이 모형에서는 투자자가 거주국에서 원천국(투자대상국)으로 투자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는 투자 경로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원천국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거주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한다. 즉 투자자가 간접 투자 경로를 선택할 때 경유국에 법인을 따로 설립하여 이 경유법인을 통해 투자금을 거주국에서 원천국으로 전달하고 나중에는 원천국에서 배당금을 받아 거주국으로 전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외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

네트워크 모형을 분석하여 세금 최소화 간접 투자 경로의 구조를 밝히고, 투자 경로에서 어느 나라들이 경유국으로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본다. 국제적으로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경유국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일반적으로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상대 국가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0%로 설정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경유국으



B5변형/ 132면
2014. 12.

로 역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원천국(투자대상국)인 경우에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 있어 스위스와 영국이 경유국으로 작동하고, 거주국(자본수출국)인 경우에는 영국, 벨기에, 홍콩,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이 경유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방안은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국내법 또는 조세조약), 특정 국가, 소득, 또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느냐(개별적 대응 또는 일반적 대응)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법에 근거를 둔 일반적 대응에는 일반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이 있고, 조세조약에 근거를 둔 일반적 대응에는 조세조약상의 주목적 심사 조항(Main Purpose Test; MPT)이 있다. 한편 국내법에 근거한 개별적 대응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 제도가 있고, 조세조약에 근거한 개별적 대응에는 조세조약상의 혜택 제한 조항(Limitation of Benefits; LOB)이 있다.

최근 OECD는 국제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 정부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개별적인 국제조세회피 유형에 대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OECD(2014)는 조세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OECD Model 조세조약에 혜택 제한 조항 및 주목적 심사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국가의 실제 조세조약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OECD 보고서는 배당소득 및 부동산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낮은 제한세율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에서 스위스와 영국이 주요 경유국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닝과 토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헝가리와 영국이 경유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스위스, 헝가리, 영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체약국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다양하게 정해지고, 이러한 세율의 차이에 의해 조세조약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세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통일하여 세율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약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조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과세당국도 주요 경유국과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09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의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FTA 확산이라는 경제적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세환급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관세환급제도의 활용 현황을 업체 규모별, 산업별, 환급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환급액 변화 추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2008년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2조원 정도였지만,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3조원을 넘어섰고, 2012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관세환급액의 빠른 증가는 개별환급액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간이정액환급도 역시 전체적인 관세환급 변화와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환급액 증가는 석유제품 산업의 개별환급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제품 산업의 2007년도 개별환급액은 약 2,800억원인데 2012년에는 약 2조원을 넘어 5년 사이에 개별환급액이 약 1.7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화학제품 산업에서 약 2천억원 이상, 그리고 일반기계,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에서 약 1천억원 정도의 개별환급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관세환급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출업체당 개별환급액도 2000년 약 2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도 수출업체당 환급액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0.15억원 정도였지만, 2012년에는 0.26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업체당 간이정액환급액이 1~2억원인 업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수출에 참여하여 환급을 받고 있었다.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액이 6억원 이상인 업체들의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관세환급을 받고 수출한 금액이 2001년에는 약 100조원이었는데 2004년에 200조원을 넘긴 이후 2011년 300조원, 그리고 2013년에는 약 400조원에 육박하였다. 이처럼 관세환급액 규모가 큰 업체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세환급액도 동시에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석유제품 산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개별환급액

이 약 94%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이 그 나머진인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관세환급을 이용하는 수출업체 수는 약 60% 정도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진인 약 40% 업체가 개별환급을 이용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 수는 많지만 환급액 규모는 작다.

환급액 규모별로 보면, 환급 받는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이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약 95%이고, 개별환급실적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약 76%이다. 수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에서도 환급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에 기여하는 한계 효과가 작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급 대상 수출액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개별환급이 간이정액환급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나 간이정액환급보다 개별환급이 수출에 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관세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전체 관세환급액 중에서 석유제품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많다. 2012년에는 석유제품 산업의 관세환급액이 2조원을 넘어 전체 관세환급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수송장비 산업, 일반기계 산업 등의 순서로 환급액이 많았다. 이들 5개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환급액에서 약 80%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세환급을 받으면서 수출되는 제품의

80%가 석유 및 석탄제품,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그리고 화학제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관세환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일반기계 산업의 환급액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등으로 이들 4개 산업이 전체 간이정액환급액의 약 72.8%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 관세환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세환급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의 경우,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은 0.578에서 0.963의 범위에 있으며 전기 및 전자산업의 관세환급액의 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이 0.802에서 0.997의 범위였다.

특히, 산업별 환급액의 탄력성 분석결과에서 석유 및 석탄제품의 탄력성이 0.578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았으며,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수송장비와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의 수출액 대비 환급률은 각각 0.5%와 0.6%이었지만, 석유 및 석탄제품 산업은 1.3%로 이들 산업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전량을 수입하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다른 산업들에 앞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보다는 관세환급제도의 비효율을 없애는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면세제도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석유제품 산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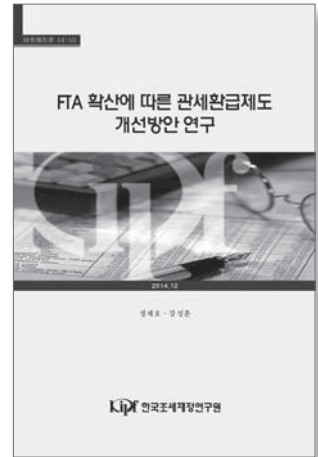
소비자 과세주위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의 관세납부 사실과 그 해당 원재료가 수출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하면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로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재료의 납세여부를 불문하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나마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이제는 FTA를 통해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저해하면서 과다 환급의 문제만 심화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제도 취지에 맞게 환급액이 소액인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과다 환급이 보조금 문제로 연계되어 통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간이정액환급제도 자체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율과 거의 상관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FTA가 확대되어 수입 원재료의 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과다 환급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급액의 수출효과를 보면, 개별환급에 비해 간이정액환급의 한계 수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간이정액환급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 수출효과는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환급액이 1억원 이상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



B5변형/ 136면
2014. 12.

과들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을 확대할 경우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액이 작을수록 환급에 따른 한계 수출효과가 개별환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급액 1억원 이하인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업체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FTA가 확대되면서 FTA 특혜세율이 0%인 품목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대상에서 제외해서 과다 환급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의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간이정액환급보다 높은 것이 타당하지만,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분석되어 제1차 금속제품 산업과 관련된 간이정액환급 품목의 환급률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농림수

산품 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에 비해 수출액 대비 환급액이 지나치게 낮아 과소 환급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환급과 관련해서는 FTA로 인해 동일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이 인정되고 있지만, 관세율이 상이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체환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이상을 FTA 체결국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입 원재료 사이의 대체환급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수용과 수출용 사이의 원재료 배분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체환급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관세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세율 차이가 큰 수입 원재료 사이에는 대체환급을 제한함으로써 FTA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개별환급에서 평균 수출액 대비 환급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타제조업제품, 정밀기기, 그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 관세가 부과된 원재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이들 산업들의 환급률이 추후에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산업에서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산업의 관세환급 품목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한 원재료 수입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FTA로 인해 단일 품목에 대해 다수

의 관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용 원재료 사이의 관세율 차이를 사전면세제도를 통해 없애므로써 과다 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곧 과다 환급에 따른 보조금 문제와 통상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면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보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향후에도 관세환급에 따른 비용과 FTA로 인한 과다 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세제도 등의 사전면세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운용 추이 및 특징과 함께 환급종류별, 산업별, 환급규모별로 분류하여 통계적 분석 및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한된 자료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과 달리 관세환급의 평균적인 수출효과뿐만 아니라 수출 및 관세환급 규모에 따라 관세환급의 수출효과 및 수출액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향후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용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14-10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요약 및 정책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5-03

요약

- 영국은 2015년 3월 18일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개편, 석유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인세는 기존에 발표했던 예정안대로 20%로 인하함
 - 소득세는 저축 장려, 소득공제 인상, 소득세 신고제도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석유세 인하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업계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 그리스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일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규칙을 발표함
 -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규칙은 각 과세연도마다 지켜야 할 이자비용의 비율에 대해 명시함
 - 배당세제에 대한 규칙은 혜택 적용 조건과 배제 조건을 명시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15년 2월 18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율인하를 포함한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함
 - 동 세율인하를 통하여 GDP 추가 상승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15년 3월 17일자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관련 제도에 대한 1차 검토 보고서를 발행함
 - 주로 금융정보 보고 범위 명확화 및 행정부담 경감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였음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3일 의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공개함
 - 예산안은 각 계층의 생활에 대해 높은 안정망 확보, 많은 기회, 향상된 주거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미래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는 가치로 제안됨
 - 예산안에서는 개인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연장, 건국 50년을 기념하여 기부금공제한도 확대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홍콩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5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
 - 예산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제한된 토지와 노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부담완화, 자녀공제확대,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면세적용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인도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8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
 - 현재 과거 어느 시점보다 호전된 경제 환경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성장의 가속화 및 투자를

강화하고 이러한 성장의 결과를 삶의 질의 개선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산안에서는 부유세 폐지 및 고소득자의 부가세 인상,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율의 향후 인하, 소비세 시행 재확인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세법 개정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면세를 하고 있음

- 해당 이자가 ISA²⁾계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동 제도가 적용됨

-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Income Tax Personal allowance)³⁾를 현행 10,800파운드에서 11,000파운드로 2017년까지 인상하여 고세율(40%)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시점을 인상시킴
- 금번 개인적 공제 상승결과 고세율 적용 시점의 소득이 현재 42,385파운드에서 2017년에는 43,300파운드로 인상되게 됨
-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이유는 저소득과 중산층 지원의 목적이 있음

1. 영국-2015 예산안 발표¹⁾

- 영국 정부는 2015 예산안을 3월 18일에 발표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 석유세 등에 관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가. 소득세

- 일정 금액(1,000파운드 또는 500파운드)을 한도로 저축을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개인저축세액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 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6년 4월부터임
 - 은행들은 2016년 4월부터 해당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20%)를 하지 않을 예정임
 - 적용 대상과 금액은 과세표준 42,700파운드 이하인 개인은 1,000파운드 이하, 과세표준 42,700파운드 초과 15만파운드 이하인 개인은 500파운드 이하임
 - 과세표준 16,800파운드 미만의 개인은 2014년의

- 영국 내의 모든 개인들 및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으로 하는 소득세 신고를 디지털 세금 계정(Digital tax accounts)을 이용하여 신고를 수시로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5년 내에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신제도는 개인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기존에 연단위로 처리했던 세무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과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추진
- 동 제도를 위해 도입되는 디지털 세금 계정(Digital tax accounts)은 인터넷을 통한 형태로 구현됨
 - 계정의 소유자들은 디지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언제든지 접

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5-documents>

2)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눠 운영되며 현금성 저축상품 · 주식 · 채권 · 펀드 · 투자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음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짐

3) 각 개인의 소득 중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임



속이 가능함

- 개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에 자신의 세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 디지털 세금 계정은 단순하고, 개인화되어 안전하도록 설계

■ 계정 소유주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을 통해 등록, 신고, 납세,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세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

- 소유주들은 디지털 세금 계정에 등록된 정보들과 계속적으로 입력되는 수입 및 지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산된 과세액, 미납세액 및 납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함
- 다만 납부는 각 세금의 기존의 납부기한 내에 처리해야 함

■ 2016년까지 5백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들과 그와 관련된 1천만명의 개인들이 디지털 세금 계정을 부여받고, 2020년까지는 모든 소규모 사업자들 및 5천만명의 개인들이 계정을 부여받게 됨

- 또한 2020년까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국세청의 디지털 세금 계정과 연동될 것이며 연동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계산되도록 함

- 20%의 법인세율은 EU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법인세율임
- 영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임

■ 각각의 석유와 가스 광구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며 석유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는 현행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석유회사들에 대하여 13억파운드의 예산 지원을 해주기로 함

-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석유 회사들의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것임

■ 주류세는 맥주는 1파인트⁴⁾당 1페니를 인하하고 증류주와 과일발효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2%p 인하함

- 단, 와인 및 탄산이 강한 과일발효주에 대해서는 인하안을 적용하지 않음

■ 은행의 비예금 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은행세(Bank levy)를 2015년 4월 1일부터 0.21%로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9억파운드의 추가 세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기 지불부채에 대해서 기존의 0.156%에서 0.21%로 인상하였으며 장기 지불부채 및 장기 지불자본에 대해서는 0.078%에서 0.105%로 인상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나. 법인세, 석유세 등

■ 법인세는 2013년의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현행 21%에서 1%p 인하하여 20%로 적용하기로 함

4) 1파인트는 0.568리터(영국에서의 단위임)

2. 그리스-재무장관이 과소자본세제와 배당세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장관령을 발표함⁵⁾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한 ‘장관령 1037’은 이자비용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넘으면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명시함
 - 회사의 이익(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 전)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60%를 넘는 경우
 -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⁶⁾의 50%를 넘는 경우
 -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의 40%를 넘는 경우
 -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EBITDA의 30%를 넘는 경우
 - 상기의 EBITDA는 회계상 자료에 세무상 손금불가 항목을 합하여 산출된 금액임
 - 단, 과세연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3백만유로 이하의 이자는 전액 손금 처리됨
- 또한 그리스에서 다른 EU 국가로 배당을 보낼 때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인 ‘장관령 1039’을 공포함
 - 이 기준에 따르면 관련 EU 회사는 그리스 법인의 지분 중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최소 연속되는 2개년 동안은 경영 참여를 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원천징수 면제의 혜택은 배당이 법적인 실체가 없는 파트너십이나 신탁 등에 지급될

때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납세자가 동 혜택을 받는 주식을 취득할 때 사용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 산입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중복적인 세제 혜택을 금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루마니아-정부가 감세안을 제안⁷⁾

- 루마니아 정부는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는 초안을 2월 18일 발표함
 - 루마니아 정부는 이러한 세율 인하안이 2016년에 1.7%의 추가적인 GDP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약 14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는 2019년 1월 1일 발효를 목적으로 하며 현행 16%에서 14%로 2%p 인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는 2016년 1월 1일 발효가 목표이며 세율을 24%에서 20%로 4%p 인하하는 것임
 - 일반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별개로 고기, 생선, 과일, 채소는 9%의 경감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임
 - 2016년 20%로 낮아질 부가가치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2%p 더 인하되어 18%가 될 것임
- 배당에 대한 과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배당에 대한 과세의 개정으로는 국내 기업이 하는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udget-2015-documents>

6)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 감모상각을 산입하기 전의 영업이익임

7)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11770309.pdf/\\$file/11770309.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5.nsf/PDFs/11770309.pdf/$file/11770309.pdf)



배당에 대해서 주주들이 부담하는 현행 16%의 세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 배당에 대한 과세 폐지는 루마니아 국내 주식시장을 투자자에게 매력적, 이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신축 공사에 부과되는 1%의 세금은 2016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것임
- 사회보장부담금의 경우 고용주는 15.8%에서 13.5%로 근로자는 10.5%에서 7.5%로 각각 2017년 1월 1일부로 인하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4. EU의 금융계좌정보 교환 관련 1차 검토 보고서 발표⁸⁾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관련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FI Group')은 2015년 3월 17일자로 관련 EU 규정⁹⁾의 이행과 관련된 1차 검토 보고서¹⁰⁾를 발행함

• AEFI Group은 2014년 10월에 결성되었으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과 관련된 EU 규정을 검토하고, 행정부담 최소화 및 합목적적 제도 실행을 위한 자문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동 보고서에서는 정보 교환 대상의 범위 및 조사방법 등 실제적인 사안과 더불어 정보 교환 관련 행정부담 등 절차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같이 포함하고 있음

• 관련 소주제별로 주요 검토 및 권고 사항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음

〈표 1〉 금융정보교환 관련 주요 논의 사항

소주제	주요 사항
이행 일정 (time line)	• 2016년 및 2017년도 귀속 금융정보에 대한 보고는 2018년부터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 EU 및 각 멤버 국들은 제반 금융정보교환 절차들이 정보보호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각 멤버 국들은 다른 제3국이 관련 정보 보호에 적합한 법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조해야 함
이행 가이드라인	• 금융소득의 정의(definition) 등 정보교환 관련 주요 사항들이 일관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각 멤버 국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체계 및 실행지침을 2016년 1월로 예정된 마감시한 전에 가급적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항에 대한 정의	• 투자실체(investment entity) 및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등 핵심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고 절차 효율화	• 전산으로 취합하기 어려운 정보 보고 부담 완화와 관련하여, 자가확인양식(self-certification form)의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작성, 개발하여 각 멤버 국들이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정보보고 제외 대상	• 각 멤버 국들은 정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및 거래실체 내역을 결정함에 있어 일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초안을 2015년 7월 이전에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
행정부담 최소화	• 해당 금융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 멤버 국들은 제도 이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음
정보보고 관련 IT 이슈	• 해당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취합,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IT 이슈들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해결방안을 개발하여야 함

8)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9) Council Directive 2014/107/EU

10) "First Report of the Commission AEFI expert group on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 2014/107/EU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European Commission, March 2015.

〈표 1〉의 계속

소주제	주요 사항
기타 보완 필요 사항 등	• EU 및 각 멤버 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금융정보교환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5. 싱가포르-2015년 예산안 공개¹¹⁾

-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3일 의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공개함¹²⁾
 - 예산안은 '미래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강화(building our future,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라는 기치로 제안됨
 - 각 계층의 생활에 대해 높은 안정망 확보, 많은 기회, 향상된 주거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고자 함¹³⁾
 - 예산안에서는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연장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가. 개인소득세

- 세금의 누진성 강화와 미래 과세소득 확보를 위해 상위 5%의 개인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상함
- 과세표준 2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32만싱가포르달러 미만의 구간을 분할하여 세 개의 구간으로 신설함

- 과세표준 16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구간에 대해 세율을 1~2%p 인상함
- 이러한 소득세율의 적용은 201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임

〈표 2〉 싱가포르 소득세율 개정안

(단위: 싱가포르달러, %)

	현행	개정안
~20,000		0.0
20,000~30,000		2.0
30,000~40,000		3.5
40,000~80,000		7.0
80,000~120,000		11.5
120,000~160,000		15.0
160,000~200,000	17.0	18.0
200,000~240,000	18.0	19.0
240,000~280,000		19.5
280,000~320,000		20.0
320,000~	20.0	22.0

자료: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재구성

- 중간 및 중상위 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과세기간에 모든 납세자에 대해 1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세액의 50%를 환급함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납세자를 기준으로 88,068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인 1천싱가포르달러의 환급을 수령할 수 있음¹⁴⁾
- 싱가포르 건국 50주년(Jubilee Year)을 기념하여 기

1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https://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6111>)

12) Singapore Budget 2015(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5/home.aspx)

13) Budget Speech(http://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5/BudgetSpeech.aspx)

14) Ernst & Young, *Singapore Budget 2015 Synopsi*, 23 February 2015, p. 37.



부금에 대한 공제의 배수를 2015년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공제기간을 연장함

- 적격기부금에 대한 기존의 2.5배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연장하되, 2015년 과세기간에 한해 기부금의 3배를 소득공제함
 - 기존에는 승인된 기관 등에 기부하는 적격기부금에 대해 기부한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2015년까지 적용함

나. 법인세

- 구조조정기간 동안 원가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법인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급한도를 축소하되 기한을 2017년까지 연장함
 - 2016년과 2017년 과세기간에 법인들에 대해 세액의 30%를 2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환급함
 - 기존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의 30%를 3만싱가포르달러 한도로 환급하였으며 201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 생산혁신세액환급(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Bonus)에 대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혁신세액공제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를 시행하고 있어 2015년에 일몰되는 환급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함
 - 2013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까지 3년간 IT 자산취득, 임직원교육 등의 적격비용에 대해 15천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환급받아 적용하고 있었음
- 고용주에게 구조조정과 임금상승에 대처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2015년에 일몰되는 임금세액공제제도(Wage Credit Scheme)를 2017년까지 2년 연장함

- 임금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월 4천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내국사용자에 대해 임금인상분의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까지 2년 연장함
- 기업의 규모 확대, 잠재력 강화, 해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제도(M&A scheme)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 면제 등의 금액을 조정함
 -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2010년 시행된 세제를 201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음
 - 지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 1억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취득가액의 5%를 공제를 허용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취득 후 5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지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인지세를 매년 20만싱가포르달러까지 면제함
 - 이러한 공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면서 적격주식 취득의 공제율 및 취득 한도를 각각 25%, 2천만싱가포르달러로 조정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격 인수합병거래의 인지세 면제한도는 연간 4만싱가포르달러로 축소함
 - 적격주식 취득의 한도는 5백만싱가포르달러로 동일하나(1억×5%=2천만×25%) 취득금액의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인해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임¹⁵⁾

15) Ernst & Young, op. cit., p. 10

- 법인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적용함
 -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부금과 동일하게 공제금액을 2015년 3배수로 조정 및 2.5배수의 2018년까지의 적용 등의 세부내용은 동일함
-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조세혜택을 개정하고, 상장 부동산투자전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감세율 적용 혜택을 연장함
 - 승인된 벤처캐피탈의 소득에 대해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기존 벤처캐피탈의 승인된 포트폴리오 투자 양도 소득, 국외 포트폴리오 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하였음
 - 벤처캐피탈이 더 이상 개척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존의 특례를 폐지하였으나, 16) 여전히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혜택부여가 필요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함
 - 상장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 비거주자 또는 개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적용되는 10%의 경감세율 등의 특례가 2015년 일몰예정이었으나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함

다. 소비세

-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는 상장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신탁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세 비용인식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함
- 특수목적기구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비용 발생 시 포함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특례를 두고 있는 것임¹⁷⁾
 - 이 특례는 2015년 일몰예정이었으나 이를 2020년까지 연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6. 홍콩-2015~16년 예산안 공개¹⁸⁾

- 홍콩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5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¹⁹⁾
 - 2015-16 예산안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제한된 토지와 노동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산안에서는 사업소득세(profits tax), 근로소득세(salaries tax) 등의 부담완화, 자녀공제확대, 기업자금집중센터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면세적용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단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소득신고를 동반하는 조세에 대해 일시적인 세액감면(tax reduction)을 실시함
 - 2014/15 과세기간에 대해 2만홍콩달러를 한도로 세

16) Ernst & Young, op. cit., p. 33

17) Ernst & Young, op. cit., p. 45

18) Inland Revenue Department: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http://www.ird.gov.hk/eng/tax/budget.htm>)

19) 政府財政預算案 The 2015-16 Budget(<http://www.budget.gov.hk/2015/eng/speech.html>)



액의 75%를 감면함

- 재산세(property tax)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임대소득은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됨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

• 자녀공제 중 출산 시 공제금액을 14만홍콩달러에서 20만홍콩달러로, 9세 이하의 자녀공제를 7만홍콩달러에서 10만홍콩달러로 확대함

■ 다국적기업의 홍콩 내 자금집중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집중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면세를 적용함

•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금집중센터에 대해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고 50%의 세액감면을 실시함
- 현재 이자수취인이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지급자에 대해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²⁰⁾

• 세제혜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은 향후 국제청에서 조례(ordinance)로 공개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7. 인도-2015~16년 예산안 공개²¹⁾

■ 인도 재무장관은 2015년 2월 28일 의회에서 2015-16 예산안을 공개함

• 현재 과거 어느 시점보다 호전된 경제 환경에서 이

를 기반으로 성장의 가속화 및 투자를 강화하고 이러한 성장 결과를 삶의 질의 개선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산안에서는 부유세 폐지 및 고소득자의 부가세 인상,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법인세율의 향후 인하, 소비세 시행의 재확인 등의 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가. 소득세

■ 세금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고소득자 증세를 위해 부유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상함

• 순자산이 3백만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1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소득세 부가세를 10%에서 12%로 2%p 인상함

■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및 연금펀드의 소득공제한도와 교통비 비과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건강보험료의 공제한도를 현행 15천루피에서 25천 루피로 상향 조정함

- 노인들에 대한 공제는 현행 2만루피에서 3만루피로 상향 조정하고 80세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 대해 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3만루피까지 공제를 허용함

•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대해 특수질환으로 인한 지출의 공제한도를 현행 6만루피에서 8만루피로 상향 조정함

20) Y. Zhang, Hong Kong—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21) Union Budget 2015-16(<http://indiabudget.nic.in/>)

- 연금펀드 등의 납입액 공제한도를 현행 1십만루피에서 1.5십만루피로 상향조정함
- 지급받는 교통비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 8백루피에서 16백루피로 상향조정함

나. 법인세

- 높은 법인세율과 다수의 면제 및 혜택으로 인한 압력단체의 출현, 불복 등의 부작용을 줄이며 보다 높은 성장과 고용을 위해 향후 4년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이와 동시에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율을 인상함
 -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향후 4년간 인하하여 25%로 인하함
 - 현행 과세표준 1천만루피에서 1억루피까지 5%, 1억루피 초과분에 대해 10%로 적용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를 각각 7%, 12%로 2%p 인상함
 -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이전가격 적용한도(threshold)를 현행 5천만루피에서 2억루피로 상향 조정함
 - 이해관계자와 국제적 정세를 고려하여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함
 - 따라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2017-18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
 - 국내 제조와 인도 내 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과세기간 중 하반기에 취득한 설비 등에 대해서는 현행 20%의 가속상각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적용되었는데 잔여 10%는 바로 이후기간에 상각을 허용함
 - 안드라프라데시주(Andhra Pradesh)와 텔랑가나주(Telangana)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의 투자에 대해 15%의 투자공제와 동시에 현행 20%의 가속상각에 15%를 부가하여 35%의 가속상각을 허용함
 - 국내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관으로 적용되는 투자기구의 범위를 확대함
 - Category I과 II에 해당하는 대체투자기구(alternative investment funds)²²⁾를 도관(pass-through)으로 간주함
 - 따라서 투자기구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에 투자한 투자자단체에 과세함
 - 이러한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다. 간접세

- 2016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간접세를 통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소비세(Good and Service Tax)의 시행을 재확인함²³⁾
 -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014년 12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과세권한 배분조정 등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22) 인도의 대체투자기구는 3가지 분류 중 하나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Category I은 창업투자, 중소기업, 사회기반시설 등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에 투자하는 펀드로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Category II는 일일자금운용에 따른 필요 이외에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는 펀드로 사모투자전문회사, 채무투자기구(debt fund)가 이에 해당함(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lternative Investment Funds) Regulations, 2012, Ch. II 3 (4))

23) 관련 내용은 「조세동향 14-12호」 참조



- 소비세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용역세(service tax), 물품세(excise duty) 등의 간접세 세율을 조정함
- 용역세의 기본세율을 현행 12.36%에서 14%로 인상하고 각 품목별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함
 - 여행사에 대한 세율을 국내와 해외여행 제공용역을 각각 0.1%p, 0.2%p, 보험용역에 대해 첫 연도와 후속 연도 보험료에 각각 0.5%p, 0.25%p를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용역세 세율을 인상함
- 각종 교육관련 부과금을 물품세에 포함시켜 물품세의 일반세율을 12.36%에서 12.5%로 인상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국가별 보고서(Country Report)* 및 거시경제 불균형 평가를 위한 2015 심층검토 보고서(IDR: In-Depth Review)¹⁾ 발표(2015.2.25.)²⁾

*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개월 일찍 보고서를 발표³⁾

- (국가별 보고서) 유로지역과 27개⁴⁾ 국가의 경제 상황, 당면한 문제, 주요 정책 이행 사항 등을 분석
 - (유로지역 관련) 적극적인 구조개혁 이행, 국가별 재정정책의 조화, 금융시장 환경 부분의 취약점을 지적

* 국가별 보고서 원문은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⁵⁾를 참고

- (심층검토 보고서) 전년 대비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의 MIP 단계는 상향 조정, 슬로베니아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포르투갈과 루마니아가 MIP 대상에 추가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에 의거, 지난 11월 조기경보 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⁶⁾에서 거시경제 불균형의 조짐이 있다고 지적된 16개 국가 대상임

- 또한 집행위원회는 재정건전화 노력(fiscal effort)

rt)과 관련해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에 대한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에 대해서는 초과재정적자 시정 기한을 2017년으로 연장하고, 적극적인 구조 개혁 이행을 촉구함

〈표 1〉 심층검토보고서 대상 국가

MIP 구분	2014	2015
(1단계) 불균형 없음	-	-
(2단계) 불균형: 정책 조치 및 모니터링 필요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루마니아 ²⁾ , 핀란드, 스웨덴, 영국
(3단계) 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모니터링 필요	헝가리	독일 ¹⁾ , 헝가리
(4단계) 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특별' 모니터링 필요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¹⁾
(5단계) 초과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특별' 모니터링 필요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¹⁾ , 프랑스 ¹⁾ , 이탈리아, 포르투갈 ²⁾
(6단계) 초과불균형: '결정적' 정책 조치 및 초과불균형 절차 작동	-	-

주: 1) 2014년 대비 변화된 국가들

2)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진행중인 포르투갈과 위기확산 예방프로그램이 진행중인 루마니아도 평가 대상에 포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European Semester 2015: College Decisions," 2015.

1) 심층검토보고서는 EU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체계인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MIP)의 일환임. MIP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 점검 및 경고, 심층 검토, 정책권고 불이행 국가 제재 등의 절차로 구성됨

2)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4504_en.htm

3) 기존에는 집행위원회가 5월~6월에 국가별 정책 권고안(draft country specific recommendation)과 함께 staff working document 형식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3월에 별도로 심층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음

4) 그리스(추후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를 제외한 EU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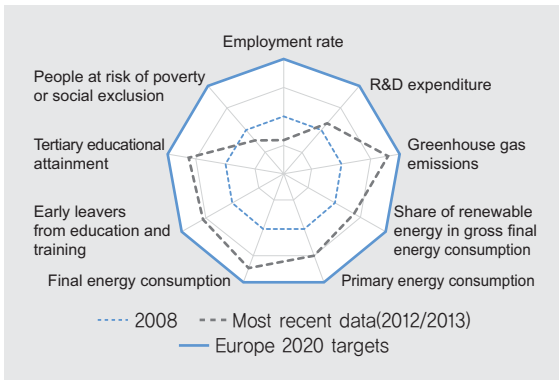
5) http://ec.europa.eu/europe2020/making-it-happen/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index_en.htm

6)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EU 회원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

혁을 촉구

- EU 통계청, Europe 2020 전략⁹⁾ 주요 목표 달성 경과 발표(2015.3.2.)¹⁰⁾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R&D 지출 부분은 다소 부진하고, 노동 및 빈곤 부분은 오히려 악화됨

[그림 1] 주요 지표 목표 및 달성 정도(2008년 이후)



자료: EU 통계청, "How is the European Union progressing towards its Europe 2020 targets?," 2015.

<표 2> Europe 2020 전략 주요 지표(EU28개국)

구분	주요 지표	과거	최근 상황		목표
		2008	2012	2013	2020
고용	고용률 (20~64세 인구 대비 비율)	70.3	68.4	68.4	75.0
R&D	R&D 관련 국내 총지출 (GDP 대비 비율)	1.85	2.01	2.02 ^e	3.00
기후변화/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index 1990=100)	90.4	82.1	:	80.0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¹⁾ (총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비율)	10.5	14.1	:	20.0
	1차 에너지 소비 (석유환산톤(TOE))	1,689	1,584	:	1,483
	최종 에너지 소비 (석유환산톤(TOE))	1,175	1,103	:	1,086
교육	학업 · 훈련 중도포기자 (18~24세 인구 대비 비율)	14.7	12.7	12.0	<10.0
	고등교육 취득 (30~34세 인구 대비 비율)	31.2	35.9	36.9	≥40.0
빈곤/사회통합 ²⁾	빈곤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인구(백만명)	116.6	123.1	121.4 ^e	96.6
	빈곤 위험 또는 사회적 배제 인구(총인구 대비 비율)	23.8	24.8	24.4	-

주: 1) Total emissions,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but excluding emissions from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2) People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are in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at-risk-of-poverty after social transfers (income poverty), severely materially deprived or living in a household with very low work intensity. Persons are only counted once even if they are present in several sub-indicators. The overall EU target is to lift at least 20 million people out of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by 2020 with 2008 as a baseline year. All data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refer to EU27.

1. e estimate, p provisional : Data not available-not applicable

9) 2010년 6월에 채택된 5개 의제(고용, 교육, 사회통합, 혁신, 기후/에너지)에 대한 장기성장 전략

10)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6664132/1-02032015-CP-EN.pdf/e339ff6c-ee5c-4385-9cbc-bce321fdb8d7>



■ EU 통계청(Eurostat),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2015.3.6.)¹¹⁾

• 201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유로존(EA18)은 0.3% 증가, EU 28개국은 0.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유로존(EA18)이 0.9%, EU 28개국은 1.3% 증가(확정치 기준)

– 주요 국가별로 전분기 대비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영국(+0.5%), 프랑스(+0.1%), 독일·스페인(+0.7%), 그리스(-0.4%) 등으로 나타남

* 미국의 2014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표 3〉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¹⁾)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4				2014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4	0.1	0.3	0.2	1.2	1.0	1.0	1.0
불가리아	0.1	0.3	0.4	0.4	1.5	1.8	1.5	1.3
체코	0.3	0.3	0.4	0.4	2.3	2.1	2.2	1.5
덴마크	0.2	0.1	0.5	0.4	0.4	1.3	1.0	1.3
독일	0.8	-0.1	0.1	0.7	2.3	1.4	1.2	1.5
에스토니아	0.1	0.9	0.4	1.1	0.4	2.4	2.3	2.6
아일랜드	2.8	1.1	0.1	-	5.1	6.2	3.6	-
그리스	0.7	0.3	0.7	-0.4	-0.4	0.3	1.5	1.3
스페인	0.3	0.5	0.5	0.7	0.6	1.2	1.6	2.0
프랑스	0.0	-0.1	0.3	0.1	0.8	0.0	0.4	0.2
크로아티아	0.3	-0.2	0.2	0.0	-0.4	-1.0	-0.6	0.4
이탈리아	-0.1	-0.2	-0.1	0.0	-0.1	-0.3	-0.5	-0.5
키프로스	-0.5	-0.4	-0.3	-0.7	-3.5	-2.1	-1.8	-1.9
라트비아	0.2	0.8	0.5	0.6	2.3	3.3	2.4	2.1

〈표 3〉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4				2014			
	Q1	Q2	Q3	Q4	Q1	Q2	Q3	Q4
리투아니아	0.5	0.8	0.5	0.6	3.4	3.3	2.7	2.5
룩셈부르크	1.0	0.5	2.3	-	2.5	1.3	3.8	-
헝가리	1.0	0.9	0.5	0.9	3.6	3.8	3.3	3.4
몰타	0.9	1.3	0.8	-	3.5	3.1	4.0	-
네덜란드 ²⁾	-0.3	0.6	0.2	0.5	0.0	1.1	1.0	1.0
오스트리아	-0.1	0.0	0.1	-0.2	0.8	0.5	0.3	-0.2
폴란드	1.0	0.6	0.8	0.7	3.5	3.3	3.3	3.2
포르투갈	-0.4	0.3	0.3	0.5	1.0	0.9	1.1	0.7
루마니아	0.3	-0.5	2.2	0.5	4.0	1.9	3.2	2.5
슬로베니아	0.0	1.0	0.6	0.3	1.9	2.8	3.1	2.0
슬로바키아	0.6	0.6	0.6	0.6	2.3	2.4	2.5	2.4
핀란드	-0.2	0.2	0.1	-0.2	-0.1	0.0	-0.2	-0.2
스웨덴	0.3	0.6	0.5	1.1	1.6	2.4	2.3	2.6
영국	0.7	0.8	0.7	0.5	2.5	2.6	2.5	2.7
EA18	0.3	0.1	0.2	0.3	1.1	0.8	0.8	0.9
EA19	0.3	0.1	0.2	0.3	1.1	0.8	0.8	0.9
EU28	0.4	0.2	0.3	0.4	1.4	1.3	1.2	1.3

주: 1) The seasonal adjustment does not include a working-day correction for Ireland, Romania and Slovakia, Iceland.

2) Percentage change compared with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calculated from working-day adjusted data.

자료: EU 통계청, "Second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2014,"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해란 연구원)

11)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6730965/2-06032015-AP-EN.pdf/27a0c028-e297-4350-b41d-2b5af66cdfaf5>

IMF

- IMF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175억달러 지원안 승인(2015.3.11.)¹²⁾
 - (지원규모) 기존 대기성 차관(SBA; Stand-By Arrangement)을 대체하여 향후 4년간 확대 신용공여(EFF; Extended Fund Facility) 형태로 약 175억달러를 지원하며, ¹³⁾ 이 중 50억달러는 긴급대출금으로 즉각 지원
 - (프로그램) 대외부문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견고한 중기 경제성장을 추진
 - 금융안정성 보장: (i) 물가안정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실시 (ii) 대외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 유지 (iii)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 공공재정 강화: (i)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 조정 (ii) 에너지부문에 대한 효율성 및 독립성 강화 (iii) 사회보장 체계 확충
 - 구조개혁: (i) 규제 완화, 반(反)부패 의제 등 경제 구조개혁 (ii) 국영에너지기업(Naftogaz)의 부채 문제 해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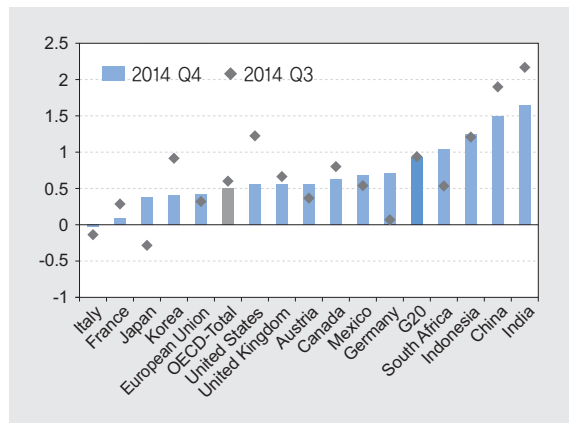
- OECD, G20 국가의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15.3.11.)¹⁴⁾
 - G20 국가의 2014년 4분기 GDP 성장률은 0.9%로 직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며, 2014년 G20 국가의

GDP 성장률은 3.4%로 2013년 3.2% 대비 소폭 증가함

- G20 국가 중 인도와 중국이 각각 1.6%, 1.5%로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보임
- 미국(0.5%)과 한국(0.4%)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크게 위축되었으며, 캐나다(0.6%), 영국(0.5%), 프랑스(0.1%)는 직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독일(0.7%)과 남아프리카 공화국(1.0%)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호주(0.5%)와 멕시코(0.7%)는 소폭 상승
- 일본의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0.7%에서 0.4%로 반등
-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그림 2] G20 국가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주: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의미하며 계절조정을 거친 자료: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12) 자료: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107.htm>

13) 2015년 3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14) <http://oecd.org/std/na/G20-GDP-Eng-Q414.pdf>



호주

1. 기타

■ 재무부,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¹⁵⁾ 발표(2015.3.5.)¹⁶⁾

• (향후 40년간 인구 및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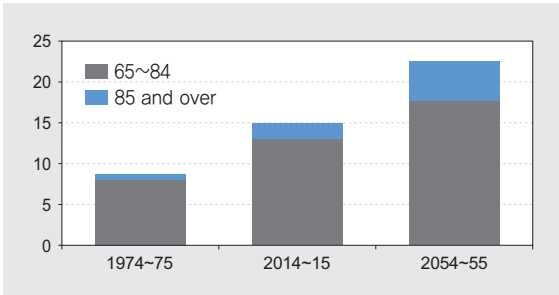
- (인구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현재 360만 명에서 2054~55에 89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15 15.0%에서 2054~55 22.6%에 달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에서 4.9%까지 급증

☞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5~64세 인구는 1974~75에 7.3명, 2014~15 4.5명, 2054~55에는 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그림 3]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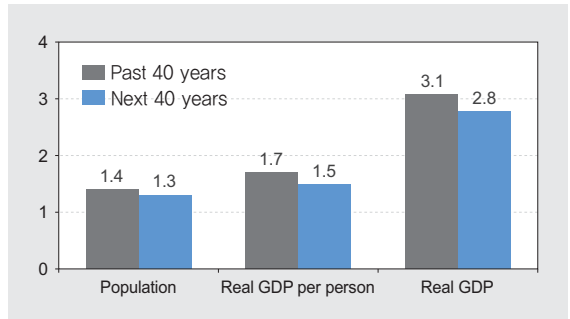
자료: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Chart 1.6, 2015.3.5.

• (경제전망) 향후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 지난 4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

-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은 인구성장률 둔화 및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에 기인
-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인당 실질경제성장률 1.5%, 명목경제성장률 5.25%, 물가상승률 2.5%, 임금상승률 4% 전망

[그림 4] 인구 및 (1인당)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Chart 1.19, 2015.3.5.

• (향후 40년간 재정 전망)¹⁷⁾

- (예산수지) 시나리오별 분석에 따르면 2054~55 GDP 대비 예산적자는 ‘previous policy’ 11.7% (5,328억호주달러), ‘currently legislated’ 6% (2,667억호주달러), ‘proposed policy’는 2019~20에 예산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 2054~55에 GDP 대비 순채무는 ‘previo

15)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현 정부정책의 향후 40년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2002년, 2007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 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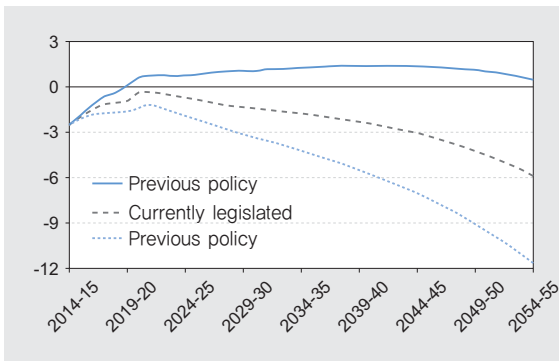
16) <http://www.treasury.gov.au/PublicationsAndMedia/Publications/2015/2015-Intergenerational-Report>

17) 재정전망 3가지 시나리오: ① ‘previous policy’: 2014~15 예산 이전 정책 기준, ② ‘currently legislated’: 현재 호주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 기준, ③ ‘proposed policy’: 2014~15 MYEFO에서 발표된 모든 정책 실행 전제

us policy' 122%, 'currently legislated'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proposed policy'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4-15 GDP 대비 15.2%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1-32에는 순채무 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그림 5] 예산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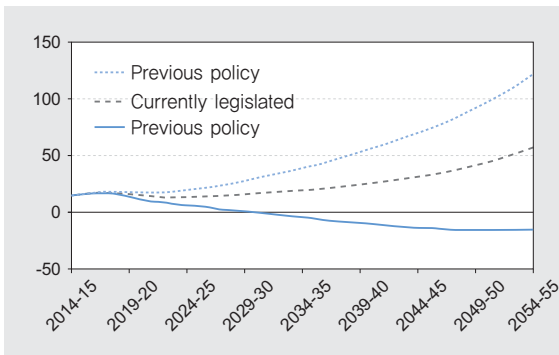
(단위: Percent of GDP)



자료: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Chart 2.1,2.4, 2015.3.5.

[그림 6] 순채무 전망

(단위: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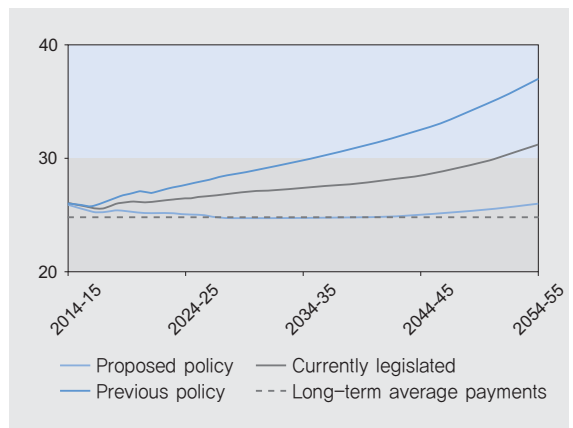


자료: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Chart 2.1,2.4, 2015.3.5.

- (재정수입) 2020-21에 금융위기 이전 평균(2000-01~2007-08)인 GDP 대비 23.9%를 회복하고 이후 전망기간 동안 그 비율을 유지한다고 전제
- (재정지출) 2054-55에 GDP 대비 총지출은 'currently legislated' 시나리오에 따르면 31.2%(연평균 3.1% 증가)에 달하고, 'proposed policy' 시나리오로는 25.9%(연평균 2.7% 증가)로 현재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 1인당 의료지출¹⁸⁾은 2054-55에 현재 2,800호주달러의 두 배가 넘는 6,500호주달러로 GDP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서비스 및 복지¹⁹⁾ 지출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그림 7] 호주 정부 총지출 전망

(단위: Percent of GDP)



자료: "2015 Intergenerational Report Australia in 2055 Overview," 2015.3.5.

18) 'proposed policy'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며, 'previous policy' 시나리오하에서는 2054-55에 GDP 대비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9) 사회서비스 및 복지 포함 항목: pensions, aged care, payments to families and individuals, and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 (미래를 위한 정책제언)

- (인구, 노동참여, 생산성) 등 보고서는 향후 40년 간 호주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구, 노동참여, 생산성을 꼽았으며, 노동참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언
 - ☞ 생산성 및 노동참여율 향상을 위한 더 단순하고, 공정한 조세시스템이 필요하며, 잘 구축된 조세시스템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매력적 투자처로서의 호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됨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기업지원 정책 등과 노동참여율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정책 방안 마련²⁰⁾
- (예산회복) 위 정책들과 더불어 호주 정부는 늘어나는 채무 및 재정적자를 지양하고 예산수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통계청, 2014년 12월 분기(December Quarter)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15.3.4.)²¹⁾

-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
 - 가계소비 지출 및 순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재고투자 및 교역조건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2014년 12월 분기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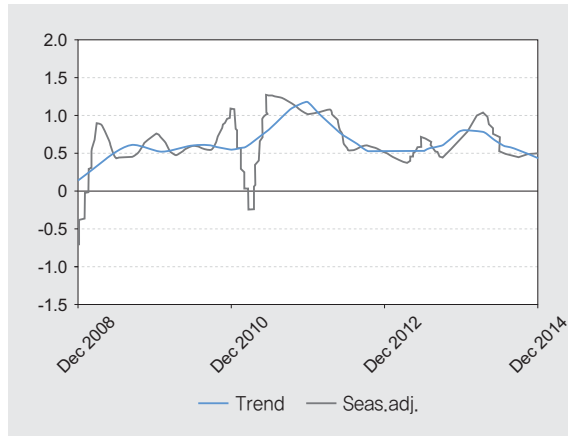
(단위: %, 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GDP	0.5	2.5
최종소비지출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8	2.6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3	-2.8
교역조건(Terms of Trade)	-1.7	-10.8
실질 순국민가처분 소득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0.4	0.5

자료: 통계청, 2015.3.4

〔그림 8〕 GDP성장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15.3.4.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20)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감축, 신흥시장 진입 규제 장벽 완화, 금융시스템 개혁 등으로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 및 중·노년층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 활성화, 새로운 고용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한 노동참여 유인 정책 시행
 21) <http://www.abs.gov.au/ausstats/abs@nsl/mf/5206.0>

 캐나다

1. 예산 · 결산 등

- 재무위원회 사무국(TBS), FY2015-16 세출예산안 (Estimates) 의회 제출(2015.2.24.)²²⁾
 - 정부지출계획(Government Expenditure Plan)과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으로 구성
 - 정부지출계획은 지불유형에 따른 본세출예산의 지불총액과 직전 회계 연도 대비 변화에 관한 세부내역, 본세출예산안은 본예산의 지출내역 및

각 연방기관별 예산을 설명

- 일반예산 지출(Budgetary expenditure)은 2,416억 캐나다달러로, 의결 지출에 882억캐나다달러, 법정 지출에 1,534억캐나다달러를 편성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지출이 약 6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 및 자본지출이 약 27.8%, 공공채무 이자지출이 약 10.6% 수준
- 투 · 용자, 선급금(Loan, Investment, Advances)이 해당하는 투용자예산 지출(Non-Budgetary expenditure)은 10억캐나다달러

〈표 5〉 FY2015-16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개요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Budgetary)	투용자예산(Non-Budgetary)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882	0.7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534	9.3
합계	2,416	10

자료: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5-16 Estimates

〈표 6〉 FY2015-16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세부내역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FY2013-14 세출	FY2014-15		FY2015-16 본세출예산	
		본세출예산	세출 실적치 (Estimates To Date)		
일반예산 (Budgetary)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	1,396	1,432	1,455	1,488
	운영 · 자본 지출(Operating and capital)	670	659	710	672
	공공채무(Public Debt)	250	263	249	256
	합계	2,316	2,353	2,414	2,416
투용자예산 (Non-Budgetary)	투 · 용자, 선급금(Loan, Investment, Advances)	297	(100)	(97)	10
	합계	297	(100)	(97)	10

자료: 캐나다 재무위원회, 2015-16 Estimates

22) 자료: 캐나다 재무위원회, Government Expenditure Plan and Main Estimates (Parts I and II), (<http://www.tbs-sct.gc.ca/ems-sgd/esp-pbc/me-bpd-eng.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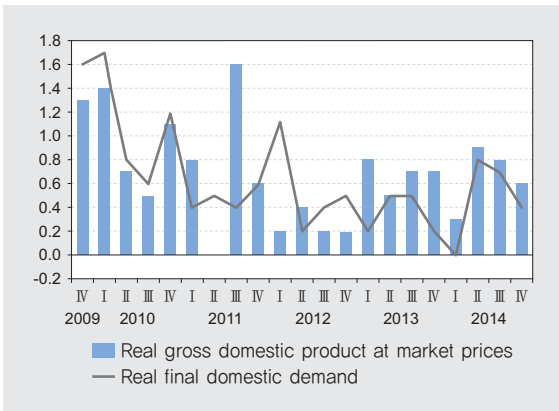


2. 기타

- 캐나다 통계청, 2014년 경제성장률 발표(2015.3.3.)²³⁾
 - 캐나다 국민계정(Canadian Economic Accounts)에서 2014년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은 2.5%로 2013년 2.0% 대비 0.5%p 증가
 - 2014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6%로 직전 분기 대비 0.2%p 감소
 - 2014년 정부소비의 증가율은 1.6%로 2013년 1.4%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 2014년 민간소비 2.8% 증가했으며, 수입 및 수출 증가율 역시 각각 1.7%, 5.4% 증가

[그림 9] 실질GDP 및 국내수요의 성장률

(단위: quarterly % change)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을 위한 2015-17년 로드맵 발표(2015.3.3.)²⁴⁾
 - 마뉴엘 발스(Manuel Valls) 총리는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을 위해 2017년까지 20억유로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2015-17년 로드맵을 발표
 - 현재 프랑스에서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3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월소득 960유로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프랑스 7개 가계 중 1개꼴로 빈곤 가정인 상황
 - 2015-17년 로드맵은 7개 분야로 구성
 - (고용, 노동과 직업훈련) 근로지원 장려금(PPE: Prime Pour l'Emploi)²⁵⁾과 활동 연대촉진수당(RSA activité: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activité)²⁶⁾을 대체하는 활동수당(prime d'activité)²⁷⁾ 2016.1.1부터 시행, 구직자를 위한 무료 직업훈련 제공 등
 - (최소한의 사회적 혜택, 권리에 대한 접근) 특별 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²⁸⁾과 연대촉진수당(RSA)²⁹⁾의 일원화, 수당지원 서류 보유 및 접근 용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인 디지털 안전(digital safe) 시범운영 등
 - (가족 및 자녀) 편모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지원수

23) 자료: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50303/dq150303a-eng.htm?HPA>

24)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lutte-contre-la-pauvrete-le-defi-a-relever-est-la-sauvegarde-de-notre-modele-social-et-des-valeurs>

25) 재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말 세금공제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26)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이지만 소득이 최저 보장 수준 이하여서 국가가 최저 소득을 보충하는 제도

27) 근로자의 구매력 강화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1,400유로 한도로 지원

28) 실업보험수급권이 종료된 장기 실직자, 실업보험 대신 연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실직자, 특별분야 노동자(예술가, 50톤 이하 25m 이하 선박 어부, 항만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조건에 따라 최저 486유로의 수당 지급

29) 일체의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소득보장 제도

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연간 5%씩 인상,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연간 10%씩 인상, 취약가정의 보육·양육 제도 강화 등

- (주택 및 숙박시설) 사회주택 연간 15만개 추가 공급, 근로자 임대보증 등
- (건강 및 의료) 보충 의료 보험(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 및 건강 보충 지원(l'Aide Complémentaire Santé)의 수혜자 75만명 확대 등
- (과다 가계부채 해결과 금융지원) 취약계층의 은행서비스 접근 강화, 소비자 정보 보호 강화 등
-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연대 정책)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유도, 시골 중심의 지방 활성화 계획 강화 등

- 2014년 4분기 실업률 잠정치 발표(2015.3.5.)³⁰⁾
 - 2014년 4분기 실업률은 10.0%로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대비 0.4%p 상승
 -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만 6천명 증가한 287만명
 - 프랑스령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10.4%로 전분기 10.3%보다 상승

〈표 7〉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 %p, 천명)

	2014 Q3	2014 Q4 잠정	증감(%p)		2014 Q4 실업자 수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9.9	10.0	0.1	0.4	2,877
15~24세	23.7	23.7	0.0	1.0	630
25~49세	9.3	9.5	0.2	0.4	1,697
50세 이상	6.8	6.8	0.0	0.4	549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15.3.5.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공공부문 투자와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계획 발표(2015.3.2.)³¹⁾
 - 2018년까지 공공부문 투자 패키지에 100억유로,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교통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디지털 인프라, 기후 변화 방지, 도시개발의 5개 부문에 70억유로를 우선적으로 투입
 - 재원이 불충분한 지방정부의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2018년까지 35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
 - 연방정부는 금번 추경이 FY2015 균형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편성될 것이고 밝힘
 - 추경예산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은 3.18일 내각에 제출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30)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14&date=20150305>

31)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15.3.3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5/03/2015-03-03-PM09.html>



이탈리아

1. 예산·결산 등

-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RGS), FY2015 예산요약(II Bilancio in breve 2015) 발표³²⁾ (2015.2.25.)
 - (재정수지) 2015-2017년도의 재정수지 전망은 전년도 전망치에 비해 악화되었으나,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수입)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도 전망치에 비해 세수가 감소할 전망
 - 2015년에 소득세 수입과 법인세 수입 모두 전년도 전망치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나, 이후 다

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2015년에 재정지출이 증가한 후 2016년에 다시 하락할 전망
 - 보건 및 교육, 경제 및 연구, 지방 기관으로의 이전지출 등의 분야에서 지출 증가가 예상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민 연구원)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4 제3사분기 예산사용상황 개요 발표(2015.3.3.)³³⁾

〈표 8〉 2015년 이탈리아 예산전망 요약

(단위: 백만유로)

항 목	2014 예산		전망		
	초기 전망	조정 전망	2015 예산법안	2016 예산법안	2017 예산법안
세입(Entrate Tributarie)	452,125	448,619	447,316	471,029	486,824
소득세 (Imposta sui redditi)	185,108	186,372	179,474	180,360	184,036
법인세 (Imposta sui reddito delle societa)	53,295	50,359	42,885	46,298	44,808
세외수입(Entrate extra-tributarie)	64,327	67,279	67,438	67,655	68,231
자산매각 및 감가상각(Alienaz. ed ammort. beni)	1,859	1,890	1,982	1,906	1,447
총수입 (ENTRATE FINALI)	518,321	517,788	516,735	540,590	556,502
경상지출(Spese correnti)	502,053	501,247	532,174	531,809	536,437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이전지출(Transferimenti correnti ad AP)	247,337	248,712	271,003	267,524	272,540
국채이자지급(Interessi passivi)	93,498	89,599	87,410	89,834	90,145
자본지출(Spese in c/capitale)	54,566	58,122	38,213	34,350	33,625
총지출 (SPESE FINALI)	556,620	559,370	570,387	566,159	570,062
공공저축(Risparmio pubblico)	14,399	14,650	-17,420	6,875	18,618
재정수지(Saldo netto da finanziare)	-38,308	-41,582	-53,652	-25,569	-13,560

자료: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 II Bilancio in breve 2015.

32) 이탈리아 국가종합회계실(Ragioneria Generale dello Stato), II Bilancio in breve 2015(http://www.rgs.mef.gov.it/_Documenti/VERSIONE-1/Attivit?i/Bilancio_di_previsione/Bilancio_in_breve/2015-BilancioINBreve.pdf)

33) 재무성, 「平成26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15.

- FY2014 제3사분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27.5%,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제3사분기 국가지출비율은 22.2%를 기록
- FY2014 제3사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비율은 19.8%,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제3사분기 국가지출비율은 19.9%를 기록

- 2015년도 국민부담률은 2014년도 대비 0.8%p 증가한 43.4%를 기록할 전망
 -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소비세율 인상, 기업수익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후생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가 원인이 됨
 -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재정수지 개선으로 인해 2014년도보다 1.2%p 감소하여 50.8%가 될 전망

2. 기타

- FY2015 국민부담률 발표(2015.2.26.)³⁴⁾

〈표 9〉 FY2014 제3사분기 예산사용 상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958,82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D)	1,007,121	세입예산액(A)	4,146,277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D)	4,187,271
제3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264,008	제3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23,837	제3사분기 국가 수납금액(B)	821,699	제3사분기 국가 지출 금액(E)	834,921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7.5 (35.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2.2 (21.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9.8 (21.3)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9.9 (19.1)
제3사분기까지 누계(C)	578,504	제3사분기까지 누계(F)	688,907	제3사분기까지 누계(C)	3,135,589	제3사분기까지 누계(F)	3,161,427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60.3 (72.0)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68.4 (69.9)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75.6 (74.4)	이번년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F/D)	75.5 (74.7)

주: ()는 전년 동기 비율
 자료: 내각부, 「平成26年度第3・四半期予k使用の状況の概要」, 2015.3.3.

〈표 10〉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세부담률(①)	22.1	22.7	23.2	23.9	25.0	25.6
사회보장부담률(②)	16.3	17.0	17.4	17.4	17.7	17.8
국민부담률(③=①+②)	38.5	39.7	40.5	41.3	42.6	43.4
재정적자(④)	12.7	12.4	10.6	9.6	9.4	7.4
잠재적 국민부담률(③+④)	51.1	52.1	51.1	50.9	52.0	50.8

자료: 재무성, 「国民負担率(对国民所得比)の推移」, 2015.2.26.

34) 내각부, 「国民負担率(对国民所得比) の推移」, 2015.



■ 2014년 제4사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15.3.9.)³⁵⁾

- 2014년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4%(연율환산 1.5%)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률 기록하였으나 1차 GDP 속보치(0.6%)에 비해 0.2%p 하향된 수치
 - 주요원인으로는 국내수요가 0.2%로 1차 속보치(0.3%)에 비해 0.1%p 하락한 것에서 기인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상향되었지만, 민간재고품, 민간기업설비가 하향조정되었고, 이것이 1차에 비해 민간수요와 국내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침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경제부,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EFSI)'에 15억 유로 지원을 발표(2015.2.27.)³⁶⁾
 - 경제부는 ICO³⁷⁾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 기금(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에 15억유로 지원을 발표
 - ICO는 EFSI에서 선별된 투자 계획에 협조용자(co-financing) 방식으로 참여하고 광범위한 지식·경험을 현장에서 전달할 예정
- 재무부, 2015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2015.3.3.)^{38) 39)}
 - 페르난데스 쿠라스(Fernández Currás) 재무부 예

〈표 11〉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

(단위: 전분기 대비, %)

항목		2013년	2014년				2014년(연율환산)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10~12월
국내총생산	1차	△0.4	1.3	△1.7	△0.6	0.6	2.2
	2차	△0.3	1.3	△1.6	△0.7	0.4	1.5
국내수요		0.2	1.5	△2.6	△0.7	0.2	0.6
민간수요		0.2	2.2	△3.6	△1.1	0.1	0.4
공적수요		0.3	△0.6	0.5	0.6	0.3	1.3
재화·서비스 순수출 ¹⁾		△0.5	△0.3	1.1	0.1	0.2	-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2014(平成26)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5.3.9.

35) 내각부, 「2014(平成26)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15.

36) 자료: 경제부, http://www.mineco.gob.es/stfls/mineco/prensa/noticias/2014/150227_01_np_icon.pdf

37) ICO(Instituto de Crédito Oficial)는 경제부 산하의 대출전문기구로서, 스페인 정부의 수출 및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38) 자료: 재무부, <http://www.minhap.gob.es/Documentacion/Publico/GabineteMinistro/Notas%20Prensa/2015/S.E.%20PRESUPUESTOS%20Y%20GASTOS/03-03-15%20NP%20SEPG%20Jornadas%20IEAF.pdf>

39) IEAF(Instituto Español de Analistas Financieros)에서 주최한 '경제·재무 전망' 컨퍼런스에서 발표

산지출차관은 2014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1.4%로 추계되는 등 경제지표가 긍정적이었으며 2015년 경제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

- 재정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도 점진적이며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영국

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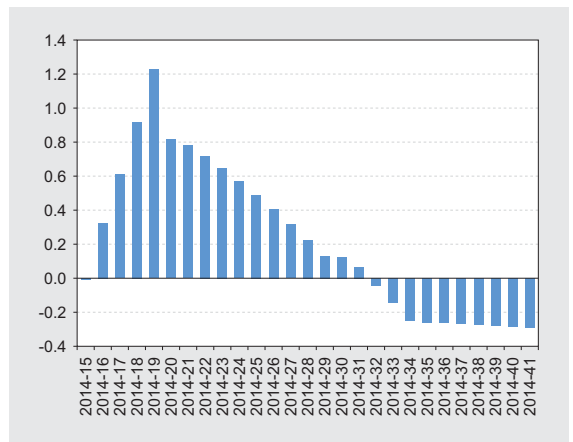
■ 재무부, 2014년 예산안⁴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5년 4월 6일부터 은퇴자는 스스로 연금사용 선택권을 갖고, 정부는 안내 서비스(Pension Wise)를 시행할 예정(2015.3.6.)⁴¹⁾

- 55세 이상 은퇴자의 확정기여형 연금⁴²⁾에 대해 기존에는 전액인출 시 55%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분할지급 연금(annuity)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새 제도는 소득 한계세율을 적용
 - 은퇴자는 연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총액인출, 연금(annuity)으로 수령, 일부 인출(drawdown)/새로운 상품투자 혹은 모든 옵션을 혼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부여
 - 재무장관은 2016년 4월부터 이러한 연금액 관리에 관한 자유를 기존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500만명에게도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2015.3.15)⁴³⁾

- 정부는 은퇴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무료로 공정한 조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Pension Wise)⁴⁴⁾를 시행하고, 2014년 예산안에서 향후 2년간 2천만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함
- 2014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동 조치로 세입이 단기 및 중기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그림 10] 참고)
 - 일부 연금 수급자들이 개인별 상황에 맞춰 미리 연금액을 인출할 것으로 예상

[그림 10] 연금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시 예상되는 세입 변화

(단위: 백만파운드)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4, 2014.3.19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40) 2014년 3월 27일부터의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재정동향」, 4월 1호 참고

41)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one-month-to-pension-freedom>

42)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43)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pension-freedom-to-be-extended-to-people-with-annuities>

44) 2015년 3월 4일에 의회에서 통과된 연금제도법(Pension Schemes Act)의 일부로 2015년 4월부터 연금액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되는 은퇴자를 보호하는 수단의 일환



 미국

1. 예산·결산 등

■ 의회예산처(CBO), 예산기준선 수정전망(Updated Budget Projections) 발표(2015.3.9.)⁴⁵⁾

- (재정전망) 재정적자 규모는 FY2015에 4,850억달러(GDP 대비 2.7%), FY2016에 4,550억달러(GDP의 2.4%)에 달하며, 이후 세출·입 격차가 커지면서 FY2025에 1조달러(GDP의 3.8%) 규모로 증가할 전망

* 재정적자는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도에 GDP 대비 9.8%로 최고점을 기록

- 사회보장부문(4.8%)과 메디케어(2.9%)는 향후 2018년까지 GDP 대비 안정적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025년에는 GDP 대비 각각 5.7%, 3.6%까지 증가

- FY2015~FY2025 기간 동안의 (연평균) 총지출은 GDP 대비 약 21% 수준을 유지하며, 순이자지

출규모는 GDP 대비 1.7%p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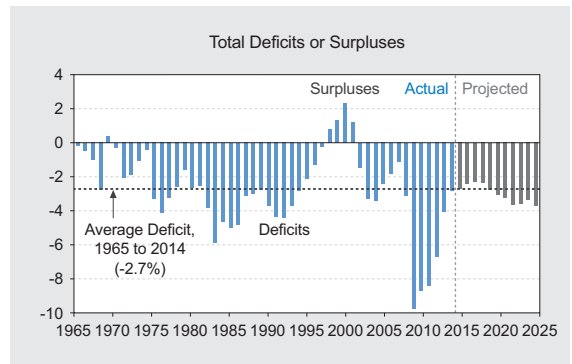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향후 4~5년간 GDP의 약 73~74% 수준 유지

* 채무규모는 2007년 수준의 2배 이상의 규모로 2050년대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으며, FY2025에는 GDP 대비 7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1957~2008년까지의 채무규모는 GDP 대비 50% 이하 수준을 보였음

[그림 11]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1965~2025)

(단위: GDP 대비, %)



<표 12> CBO, 재정전망 2015~2025년

(단위: 십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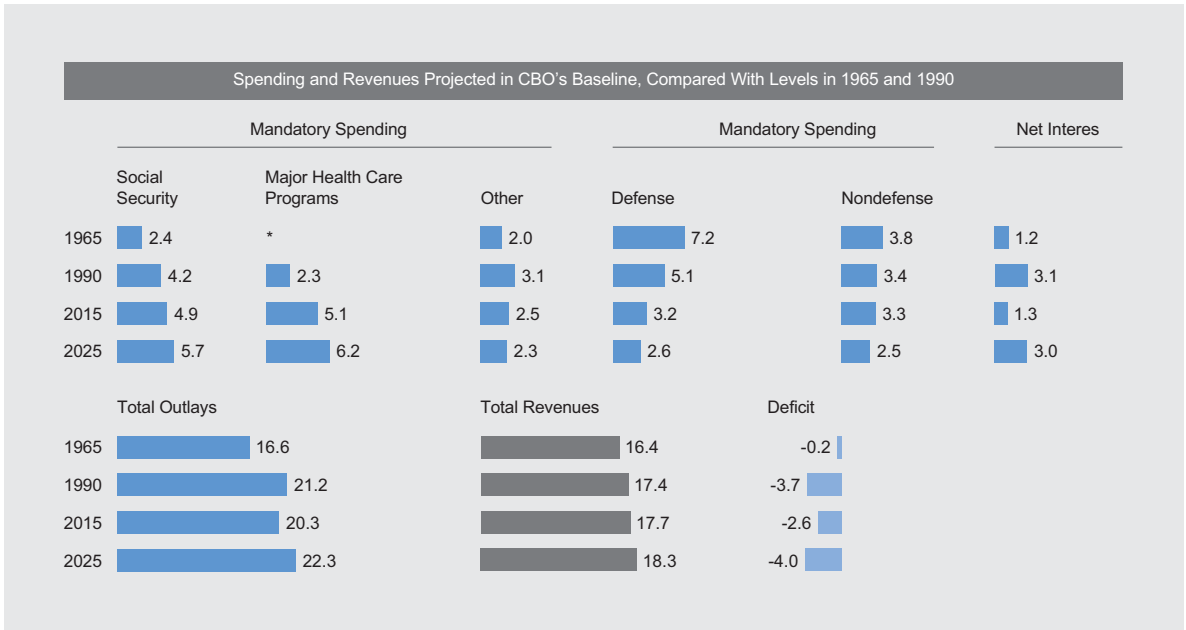
구분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6~'20	FY2016~'25
	actual	projection				
세입	3,021	3,191	3,470	3,601	18,709	41,747
(GDP 대비 %)	(17.5)	(17.7)	(18.4)	(18.3)	(18.2)	(18.2)
지출	3,506	3,677	3,925	4,056	21,410	48,956
(GDP 대비 %)	(20.3)	(20.4)	(20.8)	(20.6)	(20.8)	(21.3)
재정수지	△485	△486	△455	△489	△2,701	△7,209
(GDP 대비 %)	(△2.8)	(△2.7)	(△2.4)	(△2.3)	(△2.6)	(△3.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2,780	13,366	13,897	14,428	n.a	n.a
(GDP 대비 %)	(74.1)	(74.2)	(73.8)	(73.2)	n.a	n.a

n.a=not applicable

45) CBO, "Updated Budget Projections: 2015 to 2025," 2015.1 <https://www.cbo.gov/publication/49973>

[그림 12] CBO의 기준선 전망 규모 추이 비교<참고>

(단위: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주: Major health care programs consist of Medicare, Medicaid,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subsidies for health insurance purchased through exchanges and related spending. (Medicare spending is net of premiums paid by beneficiaries and other offsetting receipts.)

* between zero and 0.05 percent.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의회예산처(CBO),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6 Budget) 발표⁴⁶⁾ (2015.3.12.)
 - (재정전망) FY2015 재정적자 규모는 대통령 예산안에서 발표한 수치와 동일한 4,860억달러이며, FY2016에는 큰 폭으로 감소(3,800억달러)하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FY2016 이후 재정적자는 CBO 기준선보다 매년 낮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FY2025까지의 누적재정적자 규모는 CBO 기준선보다 1,2조달러

낮은 6조달러 수준 예상
 - 비정부부문 채무는 향후 10년간 72~7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FY2025에 처음으로 20조 달러대(GDP 대비 73.1%)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46) <http://www.cbo.gov/publication/49979>



〈표 13〉 CBO와 대통령예산안 재정전망 비교¹⁾ 2015~2025년

(단위: 십억달러, %)

구 분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6~'20	FY2016~'25
		actual	projection				
세입	(CBO Updates)	3,021	3,191	3,470	3,601	18,709	41,747
	(PB 분석)		3,202	3,578	3,742	19,517	43,526
지출	(CBO Updates)	3,506	3,677	3,925	4,056	21,410	48,956
	(PB 분석)		3,608	3,959	4,143	21,818	49,504
재정수지	(CBO Updates)	△485	△486	△455	△489	△2,701	△7,209
	(PB 분석)		△486	△380	△401	△2,301	△5,97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CBO Updates)	12,780	13,366	13,897	14,428	n.a	n.a
	(PB 분석)		13,375	13,844	14,332	n.a	n.a

주: 1. n.a=not applicable, PB=President's Budget

1) CBO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대통령 예산안(PB)과 기준선 수정전망(CBO Updates)의 수치 비교를 다루고 있음

- (주요 재정 변화 요인) CBO의 대통령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기준선 전망 updates를 기준으로 대통령 예산안의 주요 재정변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작전 등을 포함한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 예산 감소
 - 각종 공제 및 면제 등의 조정을 통한 소득세입의 증가 및 이민 개혁을 통해 합법시민의 증가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증대로 견히게 될 세입 증가
 - 메디케어 지출 비용 감소
 - 대통령 예산안상의 정책변화로 인한 세입증대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
 - 자본소득 및 배당소득세 인상, 기업의 해외수입에 대한 1회성 과세 및 증여세와 유산세 등의 조정 등을 통한 세입 증대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연구원〉

정책흐름



-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여 투명성 강화
-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세입 · 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여 투명성 강화

– 2015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 본 자료는 2015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에서 발표한 「세입 · 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여 투명성 강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4.15.(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세입 · 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의 재정편입 등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부담금이 세입 · 세출 외로 운용될 경우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 · 세출 외 부담금을 특별회계 · 기금 등의 재정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자의 시설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부담금 징수 등 공공성이 약하거나, 재정편입 시 국제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부담금 징수액이 미미하여 재정편입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편입대상에서 제외

** 현재 세입 · 세출 외로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16개로, '14년 징수금액은 6,211억원이며, 전체 부담금 징수액 17조원의 3.7% 수준임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16개 세입 · 세출 외 부담금의 부과목적, 운용실태 및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개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기로 하였음

• 새롭게 재정에 편입되는 부담금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등으로서, '14년 징수액 기준으로 1,398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548억원, 원안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247억원, 외교부)
-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52억원, 해수부)
- 중독예방치유 부담금(180억원, 문체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371억원, 국토부)

• 이번 재정편입으로 무분별한 사업확대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 예 · 결산을 통해 부담금의 징수 및 운용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부담금 납부자를 비롯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 ·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지역에서 신규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수료로 전환하고,

- 법률 위반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 · 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기타 수계
- 부담금의 수수료 · 과징금 전환으로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 이밖에도,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안내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먼저, 건설 관련 다수의 부담금이 별도로 부과 · 징수되어 납부자의 불편이 초래됨을 고려해, 7개 부담금*의 통합안내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 대체초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통합안내가 시행되면 건설 인 · 허가 담당부서에서 부담금별 산정내역 및 납입액,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인 · 허가 통보 공문을 통해 납부자에게 일괄 안내하게 됨
 - * '16년부터는 국토부의 건축 · 토지 관련 인 · 허가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안내를 시스템화하는 방안 추진
-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설치하고 있어 관리대상 부담금에

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 · 징수 과정의 투명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재정으로 편입되는 세입 · 세출 외 부담금 내역

(단위: 억원, '14년 기준)

부담금	소관부처	귀속기관	납부자	징수실적
합 계				1,398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548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출국자	247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내항여객운송사업자	52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사업자	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책임보험 가입자, 자동차 소유자	371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 본 자료는 2015년 4월 7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에서 발표한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4.8일(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여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은

• 정부는 재정여력이 부족하나, 민간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므로

- ① 시중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 ②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함

• 세계 각국도 최근 저성장 시대를 맞아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적임

* EU: 민간자본 위주 3,150억유로 규모의 SOC 투자계획 승인 ('15.3)

* 영국: '20년까지 전체 SOC 투자의 79%를 민자로 추진할 계획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기존 민자사업은 사업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운영 중인데,

• 정부와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총 7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임

• 위험분담형(BTO-rs: Build · Transfer · Operate- risk sharing)

: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 (예: 50:50)

• 손익공유형(BTO-a: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

: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예: 시설 투자비의 70%)를 보전하여 사업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인하

⇒ ① 중위험 · 중수익을 선호하는 금융권 투자패턴에 부합하고

② 재정상 추진이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사업도 추진 가능하며,

③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서울 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 시 건설보조금을 줄여 재정절감 가능

BTO와 BTO-rs 및 BTO-a 방식 비교

구분	BTO(현행)	BTO-rs	BTO-a
민간리스크	높음	중간	낮음
손익부담주체(비율)	• 손실·이익 모두 민간이 100% 책임	• 손실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50:50 분담 • 이익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50:50 공유	• 손실 발생 시: 민간이 먼저 30% 손실, 30% 넘을 경우 재정 지원 • 이익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공유 (약 7:3)
'14 수익률 수준(경상)	7~8% 대	5~6% 대	4~5% 대
적용가능 사업(예시)	도로, 항만 등	철도, 경전철	환경사업

② 민간의 투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법적·현실적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

-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에 대한 부담으로 SPC 지분 탈퇴자가 있어도 지분 인수가 곤란하여 사업 지연

* 동일인 등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 & 최다 출자자

⇒ 최다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SPC의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건설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 대기업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 민간 제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서류 작성부담을 절반으로 축소(기본설계를 기본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 BTO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20%에서 15%로 인하* 하여 초기 건설단계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 건설단계인 8개 도로 사업이 경우, 사업당 평균 500억원 부담 경감 효과

-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를 총점의 1%에서 2~3% 수준으로 확대

- 경쟁적 협의절차 등 신속추진절차(Fast Track)를 도입하여 소요기간을 현행 보다 3분의 1~4분의 1 정도 대폭 단축

- 민자사업은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

- 경쟁적 협의절차는 정부고시사업에 적용되며, 도로사업에 적용 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까지 현행보다 약 15개월 단축 가능(40개월 → 25개월)

* 경쟁적 협의절차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쟁점을 사전에 해소,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제도로서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 도입

현행(도로) : 40개월 ⇨ 개선(도로) : 25개월

단계	내용	단계	내용
1	•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고시	1	•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고시
2	• 평가1(사전자격심사) • 평가2(종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 평가1(사전자격심사) • 협의1, 2(기술·재무 등 사업의 주요조건) • 평가2(가격중심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	• 쟁점 협상 및 협약체결	3	• 협약체결
(사업 추진 기간 단축 효과)			

- 현행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여, 민간제안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도로사업의 경우 '제3차 제안 공고(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와 동일)~착공'까지 현행보다 1년 정도 단축 가능

* 현행절차 간소화: 그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공고(안)와 실시협약(안)을 동시 작성하고, 협상과정에서 실시간 회의를 작성하여 기간 단축

③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청사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

• 그동안 재정으로 추진해 온 사업도 예타과정에서 민자적격성이 있는 경우 민자로 추진 → 약 1.8조 원 민자전환 가능

* 최근 4년간('09~'12) 예타 통과한 81개 SOC사업의 25% 정도는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 전담(SOC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

* 향후 SOC예산이 20조원 대로 유지 시, 4분의 1 수준인 약 5조원(총사업비) 규모가 민자로 전환 가능한 대상인데, 그 중 2분의 1을 BTO(민자 70%, 재정 30%)사업으로 추진 시 약 1.8조원이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 가능 전망

• 공공청사를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13.11월 발의)이 금년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입법화에 노력

*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관공서+문화센터+임대사무실) 가능

④ 부대사업 활성화, 세제지원 등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 부대사업은 본사업보다 리스크가 높으나, 본사업 수익률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워 민간에서 사업추진에 소극적

⇒ 부대사업의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허용*함으로써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 활성화 유도

* 정부귀책사유로 사업이 해지되고 시설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민자SPC의 공익성·한시성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어 민자사업 투자 확대

에 애로

⇒ 법인세, 부가세에 민자SPC에 대한 특례 적용 검토*

* (법인세) 민자SPC는 부채상환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배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가세)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현행 '15.12월) 연장-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층평가 중

⑤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절감 추진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

⑥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절차단축이나 민원의 조기해소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 주무관청 및 KDI 검토 등 행정 내부절차는 기재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민원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주무관청 주도로 사업시행자와 함께 조속한 민원 해결 도모할 계획
• 한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무관청, KDI와 협의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17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약 13조원 규모의 기존 민자사업의 신속추진을 통해 사업기간을 3개월~18개월 단축하고, 약 1,3조원을 조기에 집행

* 미착공 중인 12개 사업(도로 6건, 철도 2건, 경전철 3건, 관광단지 1건) 대상

⑦ 향후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집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 기재부 차관(위원장),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1급 공무원, 관련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KDI 원장 등으로 구성

• 동 협의회는

- ①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점검,
- ② 기존사업 신속추진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 ③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MRG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본 자료는 2015년 4월 6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재정기획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였음
-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 현금미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방식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8.7조원, 총세출은 291.5조원이며 양자의 차이인 결산상 잉여금은 7.2조원 발생함
 -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8.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0.8조원(일반회계 0.1조원, 특별회계 △0.9조원)임
- *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상 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나, 특별회계는 개별법상 허용되는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이월 등의 사유로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가능함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37.2조원임

2014년 국가결산 세입세출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세입	회계 (일반·특별)	총세입(A)	292.9	298.7	5.8
		총세출(B)	286.4	291.5	5.1
		차년도이월액(C)	7.2	8.0	0.8
		세계잉여금(A-B-C)	△0.8	△0.8	-
기금	수입·지출	520.3	537.2	16.9	

-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38.0조원)로 인해 8.5조원(GDP 대비 0.6%) 흑자임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관리재정수지*는 29.5조원(GDP 대비 △2.0%) 적자임

* 통상 국제 비교 시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주요국과 달리 흑자 상황이므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하여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 중임

- 국가채무(중앙정부)*는 503.0조원(GDP 대비 33.9%)으로, 전년(464.0조원, GDP 대비 32.5%)보다 39.0조원(GDP 대비 1.4%p) 증가함

*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530.5조원(GDP 대비 35.7%)으로 전년보다 40.7조원(GDP 대비 1.5%p 증가) 증가함

* 지방정부채무(27.4조원은 잠정치 기준, 6월 말 결산완료 이후 확정 예정임)

- 이러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점에 주로 기인함

2014년 재정수지 ·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1. 총수입	351.9	356.4	4.6
2. 총지출	337.7	347.9	10.3
3. 통합재정수지(=1-2)	14.2	8.5	△5.7
(GDP 대비 비율)	(1.0)	(0.6)	(△0.4%p)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3	38.0	2.7
(GDP 대비 비율)	(2.5)	(2.6)	0.1%p
5. 관리재정수지(=3-4)	△21.1	△29.5	△8.4
(GDP 대비 비율)	(△1.5)	(△2.0)	(△0.5%p)
6. 국가채무	464.0	503.0	39.0
(GDP 대비 비율)	(32.5)	(33.9)	(1.4%p)

수
지
·
채
무

나. 발생주의 *에 의한 국가결산

* 현금출납 시점이 아닌 채권·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러로 인식

발생주의 체계상 2014년 자산·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자산(A)	1,666.3	1,754.5	88.2
부채(D)			
국채·주택청약저축 등(B)	521.6	567.6	46.0
연금총당부채(C)	596.3	643.6	47.3
- 공무원연금총당부채	484.4	523.8	39.4 ¹⁾
- 군인연금총당부채	111.9	119.8	7.9 ²⁾
소계(D=B+C)	1,117.9	1,211.2	93.3
순자산(E=A-D)	548.4	543.3	△5.1

주: 1) 재직자 수(107.3→108.1만명) 및 수급자 수(36.3→39.2만명) 증가, 보수인상을 실적치 반영 등에 기인

2) 재직자 수(18.1→18.2만명) 및 수급자 수(8.7→9.0만명) 증가, 보수인상을 실적치 반영 등에 기인

- 국가회계법 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발생주의에 의한 국가결산 결과,

- 자산은 1,754.5조원, 부채*는 1,211.2조원(연금총당부채 643.6조원 포함)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543.3조원임

- 부채 증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에 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총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 공무원 39.4조원 증가(484.4 → 523.8조원), 군인 7.9조원 증가(111.9 → 119.8조원)

- 연금총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 미래의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현재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음

- ※ 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중 16개국에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등 연금충당부채산정은 국제적 추세임
- ※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연금수급자 수 변동, 보수상승률·물가상승률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 2014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재직자와연금 수급자 수* 증가, 보수인상률 상승** 등에 기인함

* 재직자(125.4만명 → 126.3만명), 연금수급자 수(45.0만명 → 48.2만명)

** '15 보수인상률 실적치 반영(1.7% → 3.8%)

- 2014년 우리 경제는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세계경제의 정체, 세월호 충격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 서도,
 -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신흥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인 3.3%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미약하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음
 - ※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 ('11) 3.7 → ('12) 2.3 → ('13) 2.9 → ('14) 3.3
- 또한, 정부는 이번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하여,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
 -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1. 가계 금융부문

- **(총괄)** 총세입 298.7조원, 총세출 291.5조원, 결산상 잉여금은 7.2조원,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차년도 이월액)은 △0.8조원

2014년 총세입과 총세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상잉여금 (A-B)	차년도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계	298.7	291.5	7.2	8.0	△0.8
일반회계	239.2	236.3	2.9	2.8	0.1
특별회계	59.5	55.2	4.3	5.2	△0.9

주: 일반회계: 56개 중앙관서(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298.7조원으로 예산(309.7조원) 대비 11.0조원 미징수
 - **(일반회계)** 239.2조원으로 예산(247.2조원) 대비 8.0조원 미징수
 - **(특별회계)** 59.5조원으로 예산(62.5조원) 대비 3.0조원 미징수
- **(총세출)** 291.5조원으로 예산현액(317.0조원) 대비 92.0% 집행
- **(세계잉여금)** △0.8조원(일반회계 964억원, 특별회계 △8,582억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상환(202억원), 세입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예정
 - * 특별회계 8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2. 기금 수입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의 수입·지출액은 총 537.2조원

2014년 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조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자체수입	139.0	사업비	93.8
정부내부수입	120.8	기금운영비	2.0
차입금	116.8	정부내부지출	119.0
여유자금회수	160.6	차입금 원리금상환	115.4
		여유자금 운용	207.1
합 계	537.2	합 계	537.2

3.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8.5조원 흑자(GDP 대비 0.6%)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5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2.0\%$)로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기인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2014년 재정수지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13년 결산(A)	2014년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1. 총수입	351.9	369.3	356.4	4.6	$\Delta 12.9$
2. 총지출	337.7	355.8	347.9	10.3	$\Delta 7.9$
3. 통합재정수지(1-2)	14.2	13.5	8.5	$\Delta 5.7$	$\Delta 5.0$
(GDP 대비 비율)	(1.0)	(0.9)	(0.6)	$(\Delta 0.4\%p)$	$(\Delta 0.3\%p)$
4.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3	39.0	38.0	2.7	$\Delta 1.0$
(GDP 대비 비율)	(2.5)	(2.6)	(2.6)	0.1%p	-
5. 관리재정수지(3-4)	$\Delta 21.1$	$\Delta 25.5$	$\Delta 29.5$	$\Delta 8.4$	$\Delta 4.0$
(GDP 대비 비율)	$(\Delta 1.5)$	$(\Delta 1.7)$	$(\Delta 2.0)$	$(\Delta 0.5\%p)$	$(\Delta 0.3\%p)$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4. 국가채무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503.0조원(GDP 대비 33.9%)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
 -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
 -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 채증가(37.6조원)에 기인
-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530.5조원으로 GDP 대비 35.7%
 - * 지방정부 채무(27.4조원은 잠정치, 6월 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 예정)
 - 전년(489.8조원, GDP 대비 34.3%) 대비 40.7조원 증가

2014년 국가채무 결산

(단위: 조원, %)

구 분	2013년 결산(A)	2014년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 대비 (C-A)	예산 대비 (C-B)
◇ 중앙정부(A)	464.0	496.8	503.0	39.0	6.2
(GDP 대비 비율)	(32.5)	(33.0)	(33.9)	(1.4%p)	(0.8%p)
■ 국 채	459.5	491.3	498.1	38.6	6.7
■ 차입금	1.9	2.6	2.6	0.7	-
■ 국고채무부담행위	2.7	2.9	2.4	$\Delta 0.3$	$\Delta 0.5$
◇ 지방정부(B, 잠정)	25.7	18.0	27.4	1.7	9.5
□ 국가채무(A+B, 잠정 D1)	489.8	514.8	530.5	40.7	15.7
(GDP 대비 비율)	(34.3)	(34.2)	(35.7)	(1.5%p)	(1.5%p)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재무제표

◇ 국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한 결과로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

* 56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작성

-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총 1,754.5조원, 부채는 1,211.2조원, 순자산(자산-부채)은 543.3조원으로 집계
 - **(자산)** 전년 대비 88.2조원 증가한 1,754.5조원
 -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투자자산 76.3조원, 건물 취득 등에 기인한 일반유형 자산 7.5조원 증가
 - **(부채)** 전년 대비 93.3조원 증가한 1,211.2조원
 - 대부분 연금충당부채 증가(47.3조원)와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38.4조원) 사유

2014년 재무결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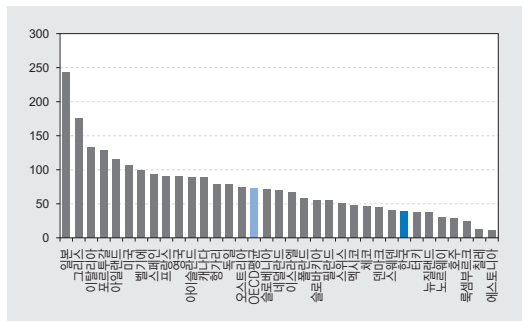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액 (B-A)	비고
◇ 자산(A)	1,666.3	1,754.5	88.2	
유동자산	291.1	314.6	23.5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563.1	615.9	52.8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508.6	516.1	7.5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294.4	298.9	4.5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1.2	1.2	-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7.9	7.8	△0.1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 부채(B)	1,117.9	1,211.2	93.3	
유동부채	108.6	117.7	9.1	1년미만 국고채,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347.8	381.9	34.1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633.8	682.3	48.5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27.7	29.3	1.6	장기미지급금(BTL 시설임대료)
◇ 순자산(A-B)	548.4	543.3	△5.1	

붙임 2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평가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규모)**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
 - * 일반정부 부채(D2, '13년): 한국(39.6%), OECD 평균(110.9%)
 - ** 공공부문 부채(D3, '13년): 한국(63%), 일본(271%), 캐나다(126%), 영국(95%)
 - **(증가폭)** '07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7.0%p)은 OECD 평균(25.2%p)보다 작음
 - * 우리나라(D1): ('07) 28.7% → ('14) 35.7%, 7.0%p 증가
 - OECD 평균: ('07) 48.8% → ('14) 74.1%, 25.2%p 증가

※ <참고자료> 국가채무 국제비교('13년 기준, IMF WEO)

(단위: %)



- 향후에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지속 추진

붙임 3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는 ①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② 국가채무(D1), ③ 일반정부 부채(D2), ④ 공공부문 부채(D3)로 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 ①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로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시 주로 활용
- ②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수립시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활용
- ③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등에 활용
- ④ 공공부문 부채(D3)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 503.0조원 (33.9%) (‘14년 결산 기준)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결산
국가채무(D1)	■ 489.8조원 (34.3%) (‘13년 결산 기준) ■ 530.5조원 (35.7%) (‘14년 결산(잠정)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D2)	■ 565.6조원 (39.6%) (‘13년 결산 기준)	D1+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 898.7조원 (62.9%) (‘13년 결산 기준)	D2+ 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주: D2, D3의 '14년 자료는 '15년 12월(잠정) 발표 예정

- 재무제표상 부채는 중앙정부 결산의 결과로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와 D3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등으로 활용
 -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상 부채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되어 대외신인도, 국익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국가 간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D2)를 사용하는 것

이 적절함

-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도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만 표시하고 국가 간 비교하는 부채 통계에는 제외하고 있음

붙임 4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서 보는 특이사항

1. 국유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4년 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정부세종청사 1단계’ 4,922억원임
-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445억원으로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건물 중 2위를 차지

건물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건물명	장부가액	비고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922	세종특별자치시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4,445	세종특별자치시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105	광주광역시 동구
4	국회의원회관	2,4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대전청사	2,409	대전광역시 서구

2.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 2014년 말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dBrain시스템 353억원임

*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무형자산 취득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무형자산	취득가액	취득년월	부처명
1	dBrain시스템	353	'06.12월	기획재정부
2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299	'11.12월	국세청
3	4세대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시스템	234	'14.12월	관세청
4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181	'12.12월	국세청
5	G2B시스템	172	'03.09월	조달청

3. 고속국도의 재산 가치는?

- 2014년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11,0조원, 서해안고속도로 6.7조원순으로 금액이 높음

고속도로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도로명	장부가액	비고
1	경부고속도로	109,787	서울~부산
2	방송장비시스템	66,853	서울~목포
3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64,046	부산~순천
4	슈퍼컴퓨터 3호기(해빛)	52,942	하남~통영
5	해양조사선	46,162	경기도 일대

4.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 128억원임

물품 장부가액 순위

(단위: 억원)

순위	물품명	장부가액	부처명
1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	128	기상청
2	방송장비시스템	10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3	엑스레이 화물검색기	95	관세청
4	슈퍼컴퓨터 3호기(해빛)	87	기상청
5	해양조사선	82	교육부(부경대학교)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허브 되려면 큰 폭의 규제 완화 필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높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현재의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규제 완화 정도가 제주도 등 국내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복도가 전했다.

이 소장은 “현재의 새만금이 전국적으로 산재한 여러 형태의 경제구역과 같이 인식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차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유치의 부진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특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만금은 국내 유일의 국가주도의 사업임에도 추진동력이 부족해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새만금에 대해 ‘규제청정지역’, ‘3무(無)공간’ 등 추상적인 개념만 다수 제시되고 있을 뿐 정책적으로 이를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새만금 노출부지 사용권한과 외국인 학교설립,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서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공동출자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완화

해 사업시행자로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 절차를 보다 간편화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5-04-21)

채무 상환능력 반영 없이 부채총량만 파악... ‘반쪽짜리’ 한은 가계부채 DB

한국은행이 매월 신기록을 세우며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지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통계치가 결합하지 않은 탓이다.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현재 어느 곳에서도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므로 국세청이 관련 정보를 한은과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유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과제로 부처 간 칸막이를 풀자는 ‘정부 3.0’

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 DB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위원장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후 구축 작업이 시작됐다. 분석 결과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의 주된 참고자료로 쓰인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분석은 매년 3월 통계청이 설문조사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한계로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답자가 소득을 축소하고 부채는 부풀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은 국세청이 키를 쥐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상 조세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통계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조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통계청에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6년 밖에 안된다. 지난 2009년 국세정보를 재정경제부·통계청·한은 등에 제공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통계청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고 일어나면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 빨리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국세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새어나가는 것”이라며 “한은이 보안대책을 확실히 한다는 전제하에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개인 소득정보는 국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역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므로 심도 있고 신속한 논의에 따른 국세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한 분석이 나와야 정부와 한은도 부채 억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저성장에 대응하려 돈을 더 풀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서울경제, 2015-04-20〉

“공기업, 분양주택·온라인몰 등서 손 떼라”

조세연, 공공기관 기능 조정 토론
“철도공사 분야별 5, 6개로 쪼개야”

앞으로 공기업은 분양주택 건설이나 온라인 쇼핑몰, 연수원, 식음료 매장 운영 등 민간과의 경쟁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의 기능조정 대상으로 꼽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구체적 기능조정 방안 논의됐다. 내달 13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OC 분야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과감히 떼어내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세정 조세연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공기업이 분양주택을 짓거나, 온라인쇼핑몰 및 건물 외부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민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의 민간 이양을 권고했다. 독점 체제로 운영되는 철도분야에는 경쟁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통합체제로 운영

되고 있는 철도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5~6개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안전관리인증(HACCP)기관이 나뉘는 점, 금융지원의 운용 주체가 다른 점, 교육 홍보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점이 기능조정 대상으로 꼽혔다. 민간과 경합하는 SOC설계 감리와 수변 개발, 전시장 운영 등도 민간 위탁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화·예술 분야 토론에서는 분산된 체육활동 진흥과 인력 양성 기능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연수원, 식음료 매장, 스포츠 시설 운영 등 민간의 경쟁력이 앞선 분야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는 권고가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 내용을 기능 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5-04-15〉

재정포럼

2015년 4월호 통권 제22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김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턴)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4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4호(통권 제22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1~5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인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